

중앙아시아 3개국의 자원 현황과 진출방안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아제르바이잔)

2007. 12



발 간 사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연일 사상최고 수준을 갱신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철, 니켈, 구리 등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면서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제1의 원유소비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 경험을 보유한 유럽 등 각국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중동, 중남미의 자원보유국들은 국익을 앞세워 에너지산업의 국유화, 관련법규의 개정, 일부 품목의 수출금지 등 자원민족주의, 자원의 무기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서, 정상외교, 자금지원, 투자세액 공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주요 자원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 비해 경험, 투자재원, 기술,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현실에서 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을 대신할 에너지 자원의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500억~200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는 카스피해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하여 금, 구리, 우라늄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중앙아시아는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 자원개발 여지가 많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자원의 수송망이 갖추어져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이 높은 3개국(키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정치·경제 동향, 자원의 보유·개발현황을 기술한 후 외국인 투자환경, 우리나라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향후 진출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키자흐스탄은 우리 기업이 제조업, 자원개발,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이 매우 활발한 국가이며, 아제르바이잔은 과거 러시아연방의 원유수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최근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원유 광구의 개발권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가스와 금, 희귀광물 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경제협력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바쁜 가운데 다양하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관련 기업의 담당자, 내용 전반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한 노승재 동북아팀장, 자료의 수집과 집필에 애쓰신 이재홍 선임조사역과 심현정 전문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권두환

요약

□ 최근 경제동향

- 카자흐스탄은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상승과 활발한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연 9~10%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수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세, 외국인기업의 투자 과실 송금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 폭 확대
-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수출품인 금, 면화의 국제시세가 강세를 보여 경제성장률이 2004년 이후 연 7%를 상회하고 있고 상품수지,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선을 앞둔 재정지출 확대와 수출수입 증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간 10%를 크게 상회
- 아제르바이잔은 고유가 등 석유부문의 호조로 연간 약 30%의 기록적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국제수지의 흑자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복지·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으로 최근 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물가상승압력 가중

□ 주요 자원 현황

- 카자흐스탄은 원유(확인매장량 398억 배럴(세계 9위), 생산량 143만 b/d(세계 18위), 추정매장량 920억 배럴)와 천연가스(추정매장량 약 3조 m³(세계 11위), 생산량 연 239억 m³) 외에 석탄, 철, 우라늄 등 풍부
-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확인매장량 66조 ft³(전세계의 1%)), 원유

(확인매장량 6억 배럴) 및 금, 우라늄,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 보유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확인매장량 70억 배럴(세계 20위)), 천연가스(확인매장량 48조 ft^3 (세계 24위)) 외에 철, 아연, 몰리브덴, 명반석 등 보유

□ 최근의 자원개발정책 방향

- 카자흐스탄은 금년 9월에 지하자원개발법을 개정하여 ‘전략적 광구로서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정부가 당초 외국인투자자와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외국인투자자의 우려 증대
 -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이나라 최대의 Kashagan 유전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계기
- 우즈베키스탄은 작년 하반기 이래 수익성 높은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경문제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
 - 2006년 영국 Oxus사의 한디자 광구의 개발독점권 취소, 금광개발 법인인 미국계 Zarafshan-Newmont사의 파산절차 개시, 중국 Shengli Oilfield Dongsheng사의 원유개발사업 철수 등
- 아제르바이잔도 투자관심국에 대하여 자원개발 뿐 아니라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기술과 자금을 요구하는 등 3개국 공히 국가이익을 앞세워 자원의 보호, 자국의 국영기업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 강화

□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진출 현황

- 카자흐스탄은 우리기업이 가장 먼저 진출한 국가로서 석유공사, LG상

사, SK에너지, 대성산업 등이 Zhambyl, ADA 등 6개 광구에 지분인수방식으로 진출하여 원유의 탐사, 시추작업을 진행 중

- 우즈베키스탄은 석유공사가 아랄해의 원유·가스전 개발사업에, 광업진흥공사가 자파드노 금광개발사업과 잔타우르 우라늄광산 개발사업에 각각 참여하고 있고 Surgil 가스전 개발 및 화학설비공장 건설을 협의 중
-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공사가 지분인수형태로 Inam 광구의 시추작업을 개시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진출사례

□ 우리나라의 진출방안

- 카자흐스탄은 이미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기업이 상업성 있는 대형유전을 선점하고 있고 최근 광구개발권의 가격도 크게 상승함에 따라 우리의 자원개발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중소형 유전에 관심을 가지고 광권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익도 투자유인으로 고려할 필요
 - 최근 소득증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와 수도 이전에 따른 수요 등을 고려한 건설, 무역, 의료, 식품 분야와 아울러 CIS 국가 중 가장 발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융업 진출도 유망할 전망
- 우즈베키스탄은 반미성향이 강하고 자원개발투자의 러시아, 중국에 대한 편중현상을 축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투자를 선호하는 입장임을 적극 활용하되 외국인투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
 - 풍부한 농산물, 면화, 금 등을 이용한 식품가공, 면방, 금세공 등 분

야에 진출하되 환전, 송금 규제가 엄격한 내수보다 수출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의 석유·발전 관련기업 민영화 계획을 주시하면서 구소련 시절 건설된 각종 공장과 설비의 개보수, 신설 수요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전망

- 아제르바이잔은 생산물분배계약(PSA)이 체결된 총 26개 광구 중 현재 2개 만이 운영되고 있는 등 구소련 시절부터 70~80년 간 원유 채굴이 진행되어 카스피해 해상유전을 제외하고는 원유의 추가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탐사에 실패하였지만 가능성이 있는 광구를 선정하거나 외국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이 바람직
- 금년 4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방한시 요청하였듯이 현재 매우 취약한 도로, 공항, 전기,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문과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자원 재활용, 정화시설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진출시 유의사항

- 카자흐스탄은 자원의 저가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관권 매각시 선취권과 아울러 계약조건의 변경, 파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자원개발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의무화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정부 규제 강화로 추가부담 불가피
- 높은 수준의 용역비와 인력관리 상의 애로, 자원 개발시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의 승인 및 감독, 별도의 사회공헌기금 납부 의무 등
-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시대의 관료주의·비밀주의 잔재,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과 규제, 내각이 중심이 된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등과

아울러 정부의 자원통제전략 강화 등에 유의할 필요

- 국가의 지하자원 탐사·시추·개발 권한 독점, 관련 법률보다 대통령령을 우선시하는 경향, 투자자의 법규위반이나 계약조건 불이행시 정부의 사유재산 강제수용 허용 등
- 아제르바이잔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 정치인과 기업인의 결탁에 따른 부정부패 만연이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
- 독자적 법인 설립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고 많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관료와의 합작이나 협력이 불가피
- 금융 및 조세 시스템의 낙후, 영수증 및 회계처리의 어려움, 사업상 과도한 세금부담(법인세 22%, 부가가치세 18%, 관세 20% 등)

총 목 차

■ 카자흐스탄	1
■ 우즈베키스탄	75
■ 아제르바이잔	135

Kazakhstan

- International boundary
- - - Oblyst boundary
- ★ National capital
- Oblyst capital
- Railroad
- Road

The national capital is scheduled to be moved from Almaty to Aqmola by the year 2000.
An oblyst is named only when its name differs from that of its administrative center.
The city of Almaty has status equal to that of an oblyst.

0 200 400 Kilometers
 0 200 400 Miles

Lambert Conformal Conic Projection, SP 47N/62N

INDIA NEP

차 례

I. 정치·경제 현황

1. 일반 개황	7
2. 경제 동향	8
3. 정치·사회 동향	13

II. 에너지자원 현황

1. 매장량 및 수급 현황	15
2. 주요 유전별 개발 현황	18
3. 정유 부문 현황	24
4. 주요 석유기업	30

III. 광물자원 현황

1. 광물자원 현황	34
2. 광물자원 매장량	34
3. 광종별 현황	35

IV. 석유산업 정책과 개발단계별 주요내용

1. 주요 관련 법률	41
-------------------	----

차 례

2. 석유산업정책	41
3. 개발단계별 주요내용	42

V. 외국인 투자환경

1. 외국인 투자정책	54
2. 외환제도	56
3. 조세제도	58
4. 노동제도	60

VI. 우리기업의 투자현황 및 진출방안

1. 우리나라의 투자현황	64
2. 진출시 강점 및 약점	67
3. 우리의 진출방안	68
4. 진출시 유의사항	70

표·그림 차례

<표Ⅰ-1> 주요 국내경제 지표	8
<표Ⅰ-2> FDI 유입 추이	9
<표Ⅰ-3> 주요 대외거래지표	10
<표Ⅰ-4> 주요 대외채무 지표	12
<표Ⅱ-1> 카자흐스탄의 원유·가스 수급 현황	16
<표Ⅱ-2> 카자흐스탄 주요 정제시설	17
<표Ⅱ-3> Kashagan 유전 개발 컨소시엄 지분 현황	19
<표Ⅱ-4> 카자흐스탄 주요 유전 프로젝트	22
<표Ⅱ-5> CPC 파이프라인 지분현황	25
<표Ⅱ-6> 카자흐스탄 주요 파이프라인 및 계획	29
<표Ⅱ-7> 중국기업이 참여한 카자흐스탄 주요 석유 회사 현황	33
<표Ⅲ-1> 자원 매장량 현황	35
<표Ⅳ-1> 석유·가스전 생산물 분배계약 비교	43
<표Ⅳ-2> 계약형태별 세금납부내역	46
<표Ⅳ-3> 기타 부과세금	47
<표Ⅳ-4> 로얄티 기준	47
<표Ⅳ-5> R-factor 계산식	49
<표Ⅳ-6> 내부수익율 계산식	50
<표Ⅳ-7> P-factor 계산식	50
<표Ⅳ-8> 감가상각표	51
<표Ⅳ-9> 초과 이익세율표	51
<표Ⅳ-10> 수출임대세율표	52

표·그림 차례

<표 V -1> 신투자법(2003. 1. 8일자)의 주요 내용	55
<표 V -2> 주요 세제	59
<표 V -3> 카자흐-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내용	60
<표 V -4> 카자흐스탄의 업종별 월 급여 수준(2007. 8월 기준)	62
<표 VI -1> 우리기업이 참여한 카자흐스탄 유전 현황	65
<그림 II -1> 카자흐스탄령 카스피해 원유·가스전 현황	18
<그림 II -2> Karachaganak 유·가스전	21
<그림 II -3> CPC/BTC 송유관	26
<그림 II -4> 아타수-아라산코우 송유관	27
<그림 II -5> 카자흐스탄 주요 파이프라인	30
<그림 IV -1>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추이	64

I. 정치·경제 현황

1. 일반개황

면적	2,717천 km ²	G D P	804억 달러 (2006년)
인구	154백만명 (2006년)	1 인 당 GDP	5,223달러 (200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Tenge
대외정책	친러 친서방우호관계	환율(달러당)	126.09 (2006년 말)

-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9위의 영토대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구리, 철광석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2000년 이후 연간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세 지속
- 경제 개방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석유·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국제적으로 CIS 국가 중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
- 고유가에 힘입은 높은 경제 성장, 대외지급능력 향상, 외국인투자 증가, 고유가에 힘입은 높은 경제성장, 대외지급능력 향상, CIS 국가 중 가장 발달된 금융산업과 양호한 투자환경 등 강점이 있으나, 집권층의 과감한 개혁의지 부족과 취약한 제조업 기반 등이 성장의 걸림돌

2. 경제 동향

(1) 국내 경제

<표 I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 제 성 장 른	9.3	9.6	9.7	10.6	9.0
재 정 수 지 / G D P	-1.0	-0.3	0.6	0.8	0.2
소비자물가상승률	6.5	6.9	7.6	8.6	8.8

자료: IFS 및 EIU.

□ 금년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

- 2000~05년 중 연평균 9.5%대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07년 성장률은 약 9%로 예상. 최근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투자가 활황을 보였으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은행들이 여신을 축소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다소 위축되고 외국자본의 유입도 지연될 전망

□ 꾸준한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물가상승세 지속

- 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지속과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의 여파로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여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건설 호황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음식료 가격과 임금 상승 등으로 8.8%의 물가상승 예상

□ 재정수지는 안정세 유지

- 재정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2007년에는 농업 보조금 지급,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 산업 관련 재정수입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소폭 흑자를 유지할 전망
- 2000년부터는 석유 수출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일정액을 별도의 기금(National Fund of Republic of Kazakhstan)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기금잔액은 2007년 7월말 현재 183억 달러로 추정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 원유(확인매장량 398억 배럴(세계 9위), 생산량 143만 b/d(세계 18위)), 천연가스(매장량 3조m³(세계 11위), 생산량 239억m³(세계 28위)) 이외에도 각종 광물자원(석탄, 철, 우라늄, 크롬, 아연 등)이 풍부
-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 전반이 국제 자원시세 변동에 크게 좌우
- 석유산업은 Tengiz 유전(미 Chevron 주도), Karachaganak 유전을 비롯하여 아직 생산이 개시되지 못한 이나라 최대의 Kashagan 유전(이탈리아 ENI 주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상당기간 외국인 투자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표 I -2>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 액	2,760	2,561	2,092	4,157	1,977	6,143	6,800

자료: BIU, UNCTAD.

□ 2030년 장기국가전략 추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30년 세계 5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 현대화’, ‘경제구조 다변화’, ‘사회 현대화’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장기전략 추진과정에서 수도 개발 등에 과도한 재원이 투입되면서 균형있는 인프라 개발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다소 의문시

□ 강력한 긴축통화정책 기조 유지

- 2005년 이후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급증에 따른 유동성 증가, 국내여신 증가,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감독위원회(FSA)의 금융기관 해외차입 직접규제 등 긴축정책을 강화

(3) 대외거래

<표 I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 상 수 지	-273	335	-1,056	-1,797	-4,600
경 상 수 지 / G D P	-0.9	0.8	-1.8	-2.2	-3.7
상 품 수 지	3,679	6,785	10,322	14,642	15,000
수 출	13,233	20,603	28,301	38,762	44,900
수 입	9,554	13,818	17,979	24,120	29,900
외 환 보 유 액	4,236	8,473	6,084	17,751	20,670

자료: IFS, EU.

□ 상품수지는 대규모 흑자 시현

- 상품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강세 지속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흑자 폭도 확대되어 상품수지 흑자는 2006년에 전년대비 40% 이상 늘어난 14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전망

□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크게 확대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기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서비스 및 소득수지의 적자폭 확대로 인해 2000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적자규모가 46억 달러로 확대 예상

□ 외환보유액은 최근 급속히 증가

- 2000년 이후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말 61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거의 3배인 17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FDI 유입 지속, 기업들의 해외차입 증가와 Tenge화 가치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매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 대외채무 급격한 증가세

- 최근 외채규모가 크게 늘어나 2006년 말 현재 외채잔액은 GDP의 91.4%인 735억 달러를 기록
 - 주로 은행들이 부동산 및 소비자 신용대출을 위해 해외차입(금년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총외채는 460억 달러)을 크게 늘린 결과로, 최근 전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인해 부동산가격 하락, 금융기관

부실화 등이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한편,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06년 말 기준 외채잔액 중 현지에 진출한 메이저 석유기업(ChevronTexaco, BG, Eni 등)의 본지사간 대여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대외채무는 GDP의 약 62%인 485억 달러로 발표

<표 I -4>

주요 대외채무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외 채 잔 액	22920	32713	43403	74023	92076
순 외 채 ^(*) 잔 액	10937	16038	24175	48510	65591
총외채잔액/GDP	74.3	75.7	77.3	95.1	101.1
순외채 ^(*) 잔액/GDP	35.5	37.1	43.1	62.2	72.0
DSR(총외채기준)	35.2	36.2	36.2	31.1	52.9
DSR(순외채주)기준)	17.6	15.6	18.0	16.1	33.0

주: 국제석유기업의 모기업과 현지 자회사 간의 대여금을 제외한 대외채무.

자료: NBK.

- 1990년대에 리스케줄링(1993년 대 러시아 무역채무 12.5억 달러 등)을 경험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채무상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석유수출로 축적한 외환보유액,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정부의 신중한 대외차입 정책에 비추어 단기적으로 외채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

3.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정치적 안정 유지 속에 불안요인 잠복

- 15년간 장기 집권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차례 개헌으로 사실상 영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2005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도 예상대로 압승
- 나자르바예프는 복지정책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등 주변 CIS 국가들에 비해 온건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공정 선거와 야당·언론 탄압으로 반대세력을 교묘하게 말살하고 있다는 평가
- 단기적으로는 나자르바예프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2012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과 나자르바예프의 정치력 약화 우려 등 중기적으로는 체제불안 가능성 상존

□ 주변 강대국들과 등거리 외교 추진

- 최대교역국이자 원유의 수송로를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으며, 러시아와의 정치 및 경제협력관계를 가장 중요시
- 중국과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지역안보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이외의 수출선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개발, 송유관 건설프로젝트 등을 통해 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

- 미국은 핵무기 및 핵관련 물질 폐기를 조건으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석유·가스·통신 분야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은 9·11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도 적극 협조
- 한편, 인권문제, 최근 CIS 지역의 시민혁명 배후설 등으로 인해 대미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은 계속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계강화 모색
- 한편, 나자르바예프는 국제사회에서 입지 강화를 위해 2009년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국 지위획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국들은 동국의 인권 및 비민주적인 면을 비판하면서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원만한 관계정립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유보

(2) 사회 및 소요사태

□ 소요사태 등 사회불안 요인 크지 않아

- 후진적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득증가로 국민들의 정부 지지도가 높고, 테러나 심각한 조직범죄 등 사회불안 가능성도 낮은 편
- 다민족(카자흐계, 러시아계 등), 다종교(이슬람수니파, 러시아정교 등) 사회이나 민족 및 종교분쟁은 거의 없고, 1999년 12월 수도 이전(알마타→아스타나) 결정도 러시아계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

II. 에너지자원 현황

1. 매장량 및 수급 현황

- BP(British Petroleum)는 원유의 확인매장량을 2006년 현재 398억 배럴, 천연가스는 105.9조 ft^3 로 추정¹⁾
- 원유매장량의 30~40%가 해양지역(카스피해 등)에 위치하며 상업적 가치가 있는 매장량의 약 2/3는 석유 및 컨덴세이트²⁾인 것으로 평가
 - Tengiz, Karachaganak, Kashagan, Uzen 유전 등이 대표적
- 원유생산량은 '91년에 569천b/d이었으나 이후 구소련 붕괴에 따른 경제혼란과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수출제한으로 감소하다가, 1995년 이후 외국기업들의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고 러시아와 원유수출협정을 체결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여 '06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142만 b/d를 기록
 - 2002년 6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 최저 연간 1,500만 톤(30만b/d), 마하치칼라(Makhachkala)-티호레츠크(Tikhoretsk)-노보로시스크(Novrossiisk) 파이프라인을 통해 최저 연간 250만 톤(5만b/d)의 원유수출 할당을 보증하는 장기협정(15년) 체결

1)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가채매장량을 65조~100조 ft^3 로 추정

2) 초경질원유

- 2001년 Tengiz-노보로시스크 CPC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등 러시아로부터 공급망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원유 증산의 토대 마련

□ 정부는 산유량을 2015년까지 350만b/d로 증대할 계획이었으나, Tengiz · Kashagan 유전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목표를 260만 b/d로 수정

- Kashagan 유전(120만b/d), Tengiz 유전(65만b/d), Kurmangazy 유전(60만b/d), Karachagan 유전(50만b/d) 등 주로 대형유전에서 증산 계획
- 중기 적으로 Tengiz 유전과 Karachaganak 유전, 장기적으로 Kashagan 유전의 생산 개시로 산유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천연가스는 매장지역이 대부분 서부지방이나 주요 소비지는 남부와 북부지방인데다 수송망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는 수출하고 국내소비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표Ⅱ-1> 카자흐스탄의 원유 · 가스 수급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원유	매장량(10억 배럴)	398	398	398	398	398	398
	생산량(천b/d)	836	1,018	1,111	1,297	1,364	1,426
	소비량(천b/d)	186	193	183	188	208	221
가스	매장량(조 m ³)	2.0	3.0	3.0	3.0	3.0	3.0
	생산량(10억 m ³)	108	106	129	206	233	239
	소비량(10억 m ³)	10.1	11.1	133	154	196	202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7.

□ 한편, 북동부, 서부, 남부에 3개의 대형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능력은 약 40만 b/d

- 이들 정유공장의 가동률은 50~6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동서부 Kapchagay(정제능력 0.6천b/d), 남동부 Mangistau (150천b/d), 중서부 Zhanazhol(50천b/d)의 정유시설 건립을 검토 중

<표 II-2> 카자흐스탄 주요 정제시설

	정유공장	위치	정제능력 (천b/d)	정제물량 (천b/d, 2002)	운영회사
대형	Atyrau	서부	106	27	KazMunayGaz
	Pavlodar	북동부	163	38	KazMunayGaz
	Shymkent	남부	132	78	PKOP*
소형	Kondensat	북부	9	0	Kondensat
	PetroPavlovsk	북부	10	0	"
	Ust-Kamenogorsk	동부	10	0	"
	Karachaganak	북서부	8	(콘덴세이트)	KPO**

* PKOP: PetroKazakhstan Oil Product.

**KPO: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자료: Wood Mackenzie, EIA International Oil Letter 등 국외 전문지.

□ 정유시설의 현대화가 진행 중

- 일본의 Marubeni사가 1998년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관련 자금을 지원
- 2002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으로 Japan Gas Corporation이 Marubeni와 함께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2. 주요 유전별 개발 현황

<그림 II-1> 카자흐스탄령 카스피해 원유·가스전 현황



(1) Kashagan 유전

- 가채매장량 70억~90억 배럴³⁾인 세계 5대 유전의 하나로 카스피해 북부 Atyrau 인근에 위치

3) 가스주입 등 2차 복원기술 적용시 90억~13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현재 Agip-KCO를 운영회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개발사업을 추진 중
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생산개시 시기의 연기, 프로젝트 비용 상승
등 어려움에 봉착

- 고압의 천연가스 및 고유황 원유 처리시설, 북부 카스피해의 극한 기
상변화에 견딜 수 있는 해상 플랫폼 건설이 필요
- 원자재 및 서비스 비용의 증가, 미달러화 가치하락으로 총 개발비용
이 급등하여 Eni사는 당초 100억 달러로 예상되었던 1단계 개발비
용이 140억~15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또한, Kashagan의 원유를 아제르바이잔의 Baku까지 수송할 시스
템을 구축하는데 3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
- 원유생산은 2010년부터 7.5만b/d로 시작되어 2015년에는 최고 120만
b/d에 달할 전망

<표 II-3> Kashagan 유전 개발 컨소시엄 지분 현황

참여사	지 분, %
Eni Sp.A. (AgipCaspian Sea B.V. - Operator)	18.52
JSC NC KazMunayGas (KMG Kashagan B.V.)	8.33
ExxonMobil Kazakhstan Inc	18.52
Shell Kazakhstan Development B.V.	18.52
Total E&P Kazakhstan	18.52
ConocoPhillips (Phillips Petroleum Kazakhstan Ltd.)	9.26
INPEX North Caspian Sea, Ltd.	8.33

자료: www.agipkco.com.

□ '07. 9월 카자흐 정부는 동 유전에 대해 공사지연 및 환경문제를 이유로
3개월간의 사업정지를 명령

- Izmukhambetov 에너지부장관은 기술적 한계와 노동자 안전보장 문제로 인해 적어도 2009년 말~2010년 초가 되어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Tengiz 유전

□ 카스피해의 북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권자인 Chevron사는
가채매장량을 60억~90억 배럴로 평가

□ Tengizchevroil(TCO) 컨소시엄(Chevron Texaco 50%,
ExxonMobil 25%, Kazmunaigaz 20%, LukArco 5%)이 1993년부터
개발

- 2004년 27만b/d의 원유가 생산되어 CPC 송유관으로 흑해연안의 Novorossiysk 항으로 수송되었으며, 2006년 Tengiz 유전은 카자흐스탄 일 생산량의 약 21%에 해당하는 약 27만b/d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를 생산하였고, 2007년에는 30만 b/d를 생산할 계획
- Chevron사는 2010년까지 Tengiz 유전 산유량을 70만b/d로 늘릴 계획

(3) Karachaganak 유전

□ 카자흐스탄 북부에 위치한 육상유전으로 러시아 Orenburg 유전과 경계

- 영국의 BG Group과 이탈리아 Eni에 의해 주도되는 컨소시엄인 Karachaganak Integrated Organization(KIO)에 의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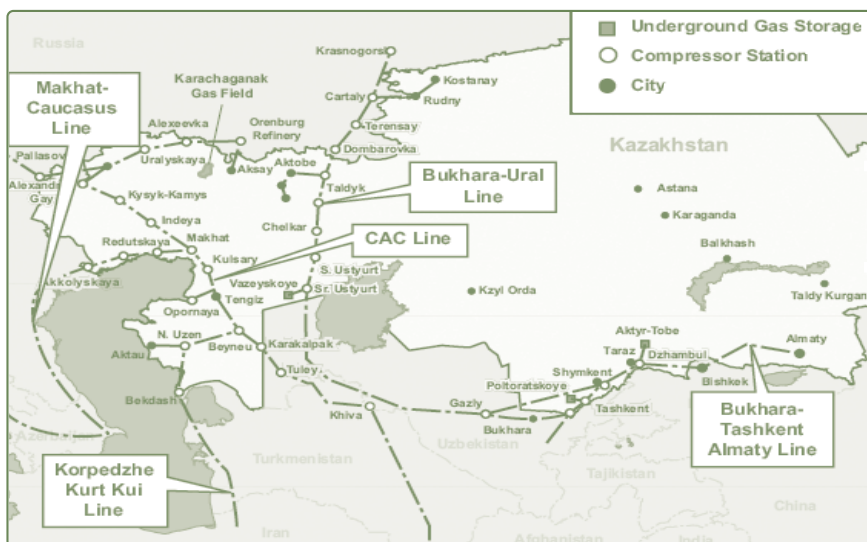
□ BG Group는 매장량을 원유 24억 배럴, 천연가스 16조 ft^3 로 평가하고 40년 이상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006년 생산량은 원유 20만b/d, 가스 5,470억 ft^3 이고, 2010년까지 원유 50만b/d, 가스 8,000억 ft^3 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

□ 과거 동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Orenburg 유전과 연결된 정제시설에서 처리

- 2003년 4월 Atyrau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의 완공으로 Karachaganak 유전과 카자흐스탄의 주 수출송유관인 CPC 송유관이 연결되면서 러시아 구매자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

<그림 II-2> Karachaganak 유 · 가스전



<표 II -4> 카자흐스탄 주요 유전 프로젝트

유전/Project	참여사(지분)	추정매장량 (억bb/조ft³)	예상 투자비	생산량(04) 및 비교
Aktobe	CNPC Aktobemuniagaz - CNPC: 88% - 기타: 12%	원유: 10	41억 달러	원유 11만 6천b/d 가스 770억 ft³/년
Arman	Nelson Resources - Canada: 50% - Shell: 50%	-	-	원유 4,200b/d 가스 8.5억 ft³
Emba	KazakhOil-Emba: 51% (KMG 자회사) MOL 및 Vegyepszer: 49%	원유: 5	-	원유 57,700b/d 가스 31억 ft³
North Kumkol	Turgai Petroleum - PetroKazakhstan: 50% - Lukoil: 50%	원유: 0.97	-	원유 70,000b/d 가스 2.3백만 ft³/일
Karachaganak	KIO(K- Integrated Org.) - Agip(32.5%) - BG(32.5%) - ChevronTexaco(20%) - Lukoil(15%)	(가채매장량) 원유: 23~60 가스: 16~46	40억 달러 (1,2단계)	원유 104,000b/d 가스 5.3억 ft³/일 향후 생산량 전망 (원유 200,000b/d, 가스 7억 ft³/일)
Karakuduk	Chaparral Resources 60% Nelson Resources 40%	원유: 0.63 (확인+예상)	개발 라이선스 25년	평균 원유 생산 8,290 b/d
Karazhanbas	Nations Energy		97년부터 2억 5,000만 달러	원유 48,000b/d (향후 8만~9만b/d 예상)
Kashagan	Agip KCO (구KIOC) - Eni 18.52% - ExxonMobil 18.52% - Total 18.52% - Shell 18.52% - ConocoPhillips 9.26% - Inpex 8.33% - KMG 8.33%	원유 가채매장량: 70~90 예상매장량: 380	93년 이래 6억 달러 이상 기 투자 최소 100억 달러 투자 예정	'08년 생산 목표 (초기 75천b/d, '16년 1.2백만b/d 생산)

II. 에너지자원 현황

유전/Project	참여사(지분)	추정매장량 (억bb/조 ft ³)	예상 투자비	생산량(04) 및 비교
Kazgermunai	PetroKazakhstan 25% Veba Oel 25% EEG 17.5% IFC 7.5%	원유: 1	3억 달러	원유 46,000b/d
Kumkol (N)	Turgai Petroleum - Petrokazakhstan 50% - Lukoil 50%	원유: 97백만~ 300백만	-	원유 37,000b/d
Kumkol (S) & S. Kumkol	PetroKazakhstan Kumkol Resource(PKKR)	원유: 116백만		수출파이프라인 개발후 생산량 증대 예상
Kurmangazy	Kazmunaigaz 50% Rosneft/Gazprom 50%	원유: 73.3	-	'09년 공동개발 개시 계획 합의
Mangistau	Mangistaumunaigaz (KMG 자회사, 100%)	-	-	원유 105,000b/d 가스 54억 ft ³
North Buzachi	Nelson Resources 50% CNPC 50%	원유: 10~ 15	8억 달러 이상	원유 8,000b/d
Tengiz	TengizChevroil (TCO) - Chevron Texaco 50% - ExxonMobil 25% - Kazmunaigaz 20% - LukArco 5%	원유: 60~90	230억 달러 이상(40년간)	원유 280,000b/d 가스 1,600억 ft ³ (16년 1백만b/d 생 산 예상)
Uzen	Uzenmunaigaz (KMG 자회사, 100%)	원유: 147	-	원유 127,000b/d 가스 298억 ft ³
Zhambyl	KazMunaigaz 73% Korean Consortium 27% - KNOC 35% - SK Corp. 25% - LG Corp. 20% - Daesung 10% - Samsung 10%	원유: 6~8	-	Kazmunaigaz와 KNOC 공동 운전자

3. 정유 부문 현황

- 원유의 생산·소비지가 크게 떨어져 있는데다 파이프라인이 부족하여 과거 원유수출에 애로
- 석유수출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현재 3개 파이프라인 가동
 -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파이프 라인망에, Kenyak-Orsk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Orsk정유소에 연결
 - 가장 최근 개통된 CPC 파이프라인은 Tengiz-Novorossiysk항을 연결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최초의 직수출 루트
- CPC 파이프라인 개통과 Atyrau-Samara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 확대로 원유 수송능력이 100만b/d를 초과하여 2007년까지 수출량을 소화할 전망

(1) 송유관

- 원유 수출의 대부분이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원유수출량은 러시아 Transneft사의 수출량 할당에 따른 영향 불가피
- 러시아, 카자흐스탄, 오만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의 Tengiz 유전지대에서 러시아의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근처의 수출터미널까지 연결

□ 송유관 개요

- 총연장: 1,580km(537km는 카자흐스탄령)
- 파이프 직경: 40~42 inches
- 명목 용량: 1,340,000 b/d
- 수송 시작: 2001년 12월

□ 지분구조

<표 II -5> CPC 파이프라인 지분현황

	CPC 파트너	소유권, %
정부	러시아	24.00
	카자흐스탄	19.00
	오만	7.00
기업	ChevronTexaco	15.00
	Lukoil(Lukoil & BP JV)	12.50
	ExxonMobil	7.50
	Rosneft-Shell JV	7.50
	Agip	2.00
	BG	2.00
	Oryx	1.75
	Kazakhstan Pipeline Ventures	1.75

자료: The Russian Energy vol.2 issue 93, 2003.12.1.

- 컨소시엄 기업들은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송유용량을 현재의 56.5만 b/d에서 2009년까지 134만b/d로 늘릴 계획
- 운송되는 대부분의 원유는 카자흐스탄의 Tengiz 유전에서 공급

카자흐스탄

- 2003년 TengizChevroil(Chevron-Texaco사), Turgai Petroleum (Lukoil과 PetroKazakhstan의 합작회사), BG와 Agip 공동으로 운영하는 Karachaganak Integrated Org.(KIO)만이 이 루트를 이용

□ CPC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국내를 통과하지만 국제 컨소시엄에 의해 건설·운영되어 Transneft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파이프라인

- 러시아 측도 카자흐스탄에 대해 파이프라인 사용조건을 계속 완화해 주면서 사용을 권유

<그림 II-3>

CPC/BTC 송유관



(2) 아타수(Atasu)-아라산코우(Alashankou) 송유관

□ 2005년 12월 완공된 카자흐스탄 아타수와 중국 아라산코우를 연결하는 총 연장 962km의 송유관

- 운영권자는 중-카 송유관회사(Kazakh-Chinese Pipeline Company)로 KazMunaiGaz의 수송 자회사인 KazTrasOil과 CNPC의 자회사인 CNODC(China National Oil Development Corporation)의 합작사
- 초기 수송용량은 약 20만b/d로 설계되었으며, 8억 달러의 비용 소요
- 2005년 7월에는 동 송유관의 아라산코우에서 신장 자치구의 두산지(Dushanzi)까지 연결되는 246km의 송유관 완공

□ 러시아의 Omsk-Pavlodar-Chardzhou를 경유하는 송유관(20만 b/d)도 아타수를 경유함에 따라 상당량의 러시아산 원유가 아타수-아라산코우 송유관을 통해 중국까지 수출될 가능성

<그림 II -4> 아타수-아라산코우 송유관



- 그러나 러시아의 Transneft가 중국까지의 독자 송유관 건설을 고려하고 있어 러시아산 원유가 아타수-알라쉬안코우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허가할지는 미지수

□ CNPC의 자회사인 Chinaoil이 원유 공급원의 확보를, Kaztransoil은 송유관에 대한 기술적인 운영을 담당

□ 원유의 충분한 공급이 보장된다면 추가로 가압소를 건설하여 송유관의 수송능력을 두 배로 증대 가능

- 그러나 잠재적인 수요자들은 CNPC측이 아타수에서도 원유 판매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Lukoil은 가격상 이유로 CNPC측의 상기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
- Lukoil은 동 송유관을 통한 대 중국에 원유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CNPC와 판매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3) 파이프라인 추가 건설계획

□ 카자흐스탄은 수출루트의 다양화를 추진

- Aktau와 아제르바이잔 Baku를 연결하는 Trans-Caspian 파이프라인은 Baku-Ceyhan 파이프라인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Mobil, Shell, Chevron 등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

-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이란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표 II-6> 카자흐스탄 주요 파이프라인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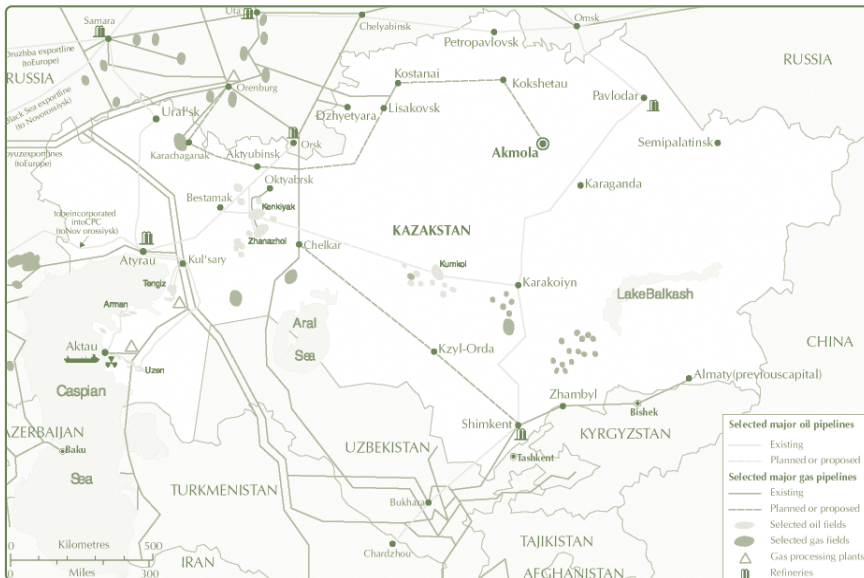
파이프라인	노선 및 거리	수송능력	거 리	비용/투자	비 고
Atyrau-Samara 파이프라인	Atyrau(카)-Samara(러) 695km	현재 30 만b/d 50만b/d로 증 대계획(28")	432마일	- 3,750만달러 투자하여 수 송능력증대	펌프 등의 시설 추가 로 수송능력 확장
Caspian Pipeline Consortium (CPC)	Tengiz 유전-Novorossiysk	- 현재 56.5만 b/d - 2015까지 134만b/d 확대 계획	990마일	- 25억 달러 (1 단계) - 총 42억 달러	- 2001년 10월 Novorossiysk에서 첫 선적 - 2002년말까지 60 만b/d 전망
이란 스왑 파이프라인	Neka(이란)-테헤란	- 18만b/d - 37만b/d로 증대 계획	208마일	4억~5억 달러	- 건설중
카자흐스탄-중국파이프라인	Aktjubinsk (카자흐스탄) - 신징(중국)	40만-80만 b/d (제안)	1,800마일	30억~35억 달러	- 97년합의 - 99년 타당성 조사 중단 (카자흐스탄 공급량 부족)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페르시아만	100만b/d (제안)	930마일	12억 달러	- TotalFinaElf사 타당성 조사중
Central Asia 파이프라인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Gwadar (파키스탄)	1백만b/d (제안)	1,040마일	25억 달러	- 양해각서 체결 - 자금조달 및 정치 불안으로 중단
Trans-Caspian	Aqtau(카자흐스탄 서부)-Baku (Ceyhan까지 연결)	N/A	370마일 (Baku 까지)	20억~40억 달러	- 타당성 조사계약 체결 - 카스피해 영유권 문제로 중단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은 이란과의 스왑거래(12만b/d)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이란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희망

<그림 II-5> 카자흐스탄 주요 파이프라인



4. 주요 석유기업

(1) 국영석유기업(KazMunaiGaz)

-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의 국영석유 기업인 KazMunaiGaz가 주관

- '02년 2월 대통령령으로 Kazakh Oil사와 TransNefteGaz사를 합병, 탄생

- 석유가스에 대한 통합 정부정책 창출 및 효과적·합리적 개발 추진
- 모든 석유계약에 의무적 참여를 통해 운영자로서 정부의 이익 대변
-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에 대한 정부규제 기능의 수행

□ KazMunaiGaz는 '06년 PetroKazakhstan 지분 33%, Kazgermunay 지분의 25% 인수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생산광구의 획득

- PetroKazakhstan은 Kumkol 유전 등 9개 유전(7개 유전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만b/d의 원유를 생산
- KazMunaiGaz는 Akshabulak, Nuraly, Aksay 유전 및 광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Petro Kazakhstan의 지분 33%(10억 달러)를 인수
- 이와 함께 Kazmunaigaz는 Shymkent 정유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PetroKazakhstan Oil Products사의 모회사 지분 50%도 인수
- Kazmunaigaz는 최근 해외 IPO를 추진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

(2) 외국석유기업

□ 러시아의 Lukoil사는 카자흐스탄 제2위 석유기업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카스피해의 신규 유전 획득에 주력할 계획임을 발표

- Lukoil의 자회사인 Lukoil Overseas는 지난 10년간 카자흐스탄에

총 4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현재 7개의 육상 프로젝트와 4개의 천해 프로젝트에 참여

- 동사는 향후 5년간 1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카스피해에 위치한 South Zaburunie 광구 및 South Zhambai 광구 취득을 모색

□ Shell사와 ONGC는 카스피해 광구 획득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상을 추진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Shell사가 추정 매장량 25억 배럴인 Nursultan 해상광구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ONGC사는 카자흐스탄 Kazmunaigaz와 Satpayev 광구의 공동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ONGC는 2005년 2월에도 카자흐스탄의 Tengiz, Kashagan, Kurmangazy, Darkhan, Akku, Zhetusy 유전에 관심을 표명

□ 스페인의 Repsol-YPF사는 카자흐스탄의 Zhambai 유전개발(매장량 68억 배럴)을 추진 중

- 동사는 현재 50%의 지분을 보유한 Kazmunaigaz와 25%의 지분을 취득한 Caspian Investment Resources사(Lukoil사와 Mittal Investments사가 설립한 합작회사)와 함께 추진

□ 중국은 CNPC에 이어 최근 금융기관들도 카자흐스탄의 석유자산 확보에 적극적

- CNPC는 PetroKazakhstan(66%), Aktobemunaigaz(85%),

Kazgermunai(50%), Buzachi(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석유생산량의 23%인 28만b/d를 생산

<표 II-7> 중국기업이 참여한 카자흐스탄 주요 석유회사 현황

기업명	중국기업과 그 지분율	2005년 생산량 (백만톤)
CNPCAktobemunaigas	CNPC(85.5%)	5.83
PetroKazakhstan	CNPC(67%), KazMunaiGas(33%)	3.05
Turgai Petroleum	PetroKazakhstan(50%), Lukoil(50%)	3.00
Kazgermunai	PetroKazakhstan(50%), KazMunaiGas(50%)	1.90
Buzachi Operating	CNPC(50%), Lukoil(50%)	0.75
AiDan Munai	CNODC(100%)	0.4
Nations Energy (Karazhanbasmunai)	CITIC(50%), KazMunaiGas(50%)	2.24

자료: 『석유와 자본』, 2007, No.1.

- CNPC는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인근 지역 유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Mangistaumunaigaz사 인수 등을 추진
- 중국 국영투자사인 CITIC는 10월 캐나다 Nations Energy가 보유하고 있는 Karazhanbasmunai사(3.4억 배럴, 5만b/d 생산)를 19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정유공장 건설도 고려 중

Ⅲ. 광물자원 현황

1. 광물자원 현황

- 석유, 가스를 제외한 철광석과 비철금속, 우라늄의 생산이 2005년 GDP의 약 27%를 차지하는 등 광물자원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 카자흐스탄의 광업부문 기업은 41개의 선광처리 공장, 11개의 heap-leach 금 공장, 7개의 ISL 우라늄 공장, 19개의 망간·철광석 파쇄/분류 공장, 8개의 야금소 등 총 80여 개
- 원유개발 등 광업 분야에 대한 2005년 투자액은 약 100억 달러였으며, 이중 외국인 직접투자가 80%를 차지
- 우라늄, 연, 아연,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니켈 등도 풍부
- 동부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까지 33억 4,000만 달러, 이후 2030년까지 36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최대 관심사는 Bolshevik과 Bakyrchik의 금광상(추정매장량 14.1톤, 326톤)과 Aktogai 동광상

2. 광물자원 매장량

- 공식 확인된 광물자원 매장지는 연·아연 38개소, 철광 15개소, 동 46개소, 금 90개소, 금을 포함한 혼합광 39개소 등

<표Ⅲ-1> 자원 매장량 현황

광 종	단 위	매장량(A)	세계 전체(B)	A/B(%)	세계 순위
우 라 늑	톤	436620	2,619,310	16.7	2
크 롬	백만톤	100	1,107	9.0	2
아 연	백만톤	30	220	13.6	3
레 늑	톤	190	2,400	7.9	4
연	톤	5,000,000	67,000,000	7.4	4
카 드 뭉	톤	50,000	600,000	8.3	5
붕 소	백만톤	4	170	8.2	6
창 연	톤	5,000	330,000	1.5	6
중 정 석	백만톤	8	164	4.9	7
철 광 석	백만톤	3,300	79,000	4.2	7
셀 레 늑	톤	2,000	71,000	2.8	7
몰 리 브 덴	톤	130,000	8,600,000	1.5	8
석 탄	백만톤	34,000	984,211	3.5	9
보크사이트	백만톤	350	25,000	1.4	10
동	백만톤	14	470	2.9	11
베 린 롬	톤	10,000	438,000	2.3	12
금	톤	400	49,800	0.8	12
인 광 석	백만톤	50	11,485	0.4	15

주: 상업적 가치가 있는 매장량 기준임.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7.

3. 광종별 현황

(1) 철광석 · 철강

- 철광석은 주로 북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생산량의 50% 이상을

러시아와 중국으로 수출

-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Sokolovsko-Sarbaiskoye GPO(SSGPO)는 Sarbai, Sokolov, Kurzhunkul, Kachar 등의 노천광산과 생산량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Sokolovskaya 갭내 채광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 정광 생산량은 카자흐스탄 전체 생산량(1,500만톤)의 86%인 1,290만톤
- 세계 1위 철강업체인 Mittal Steel는 연산 550만 톤의 제강능력을 가진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고, 석탄 15억 톤, 철광석 17억 톤을 소유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435MW급)를 운용하면서 철강 생산량의 약 96%를 65개국으로 수출

(2)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 Aluminum of Kazakhstan(AK)은 세계 10대 알루미늄 생산기업 중 하나로서 Pavlodar 알루미늄 정련소, Torgai 및 Krasny-Oktyabr 보크사이트 광산 등을 보유하고 있고, Keregetas 석회석 채석장과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보크사이트 460만 톤, 알루미늄 150만 톤을 생산하여 이 중 약 87%를 수출
- 스위스의 Corica AG가 2003년 4월에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AK의 지분 31.76%를 인수한 후 Pavlodar 인근에 2013년까지 총 건설비용 8억~12억 달러 규모의 알루미늄 제련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1단계(6만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

(3) 금

- 비철금속 중 가장 중요한 광물로 30개 충적광상, 동, 은, 기타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약 60개 지역 등 총 225개 지역에서 탐사가 진행 중
- 이나라 최대 금광인 Bakyrchik와 Suzdalskoye(동카자흐스탄), Vasilkovskoye, Zhambyl 지역(북카자흐스탄)의 Akbakaiskoye 등이 대표적이며, Ridder-Sokolnoye와 Novoleninogorskoye에는 대규모 복합광석 자원 매장

(4) 동

- Kazakhmys는 세계 10대 동 광산기업의 하나이자 전기동 생산기업으로서 이나라 최대(시장점유율 94%)의 동 생산기업인데, 銅 외에도 아연, 금, 은 등을 정련, 판매하고 있으며, 銀 생산량은 세계 4위
- Kazakhmys의 주요 광산으로는 Zhezkazgan, Balkhash, Karaganda 등이 있음.

(5) 연 · 아연

- KazZinc는 연, 아연, 금, 은, 황산, 희귀금속을 연간 500만 톤 이상 생산
- 동사는 Ust-Kamenogor나 Metallurgical Combine(구 Ust-Kamenogor나 Industrial Complex), Riddersky Repair and

Mechanical Plant, Bukhtarminsky Hydro Energy Complex, Tekeli Energy Complex and Tekellii GOK 등을 소유

- Kazakhmys는 Balkhash에서 아연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용 아연을 생산

(6) 니켈

- Aktyubinsk 지역의 Kimpersaiskoye 니켈 광상은 1940년대부터 개발되었는데 현재 이 광상의 산화 광석들은 남부 우랄 지역의 제련소에서 용해 첨가제로 사용
- 영국의 Oriel Resources사는 카자흐스탄 기업인 Muzbel과 합작으로 북부 지역의 Shevchenko 니켈 광산(추정매장량 7,900만 톤 (0.92% Ni))을 개발 중

(7) 우라늄

-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60%가 남부의 Suzak 지구에 매장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전세계의 약 3% 수준⁴⁾
- 국영기업인 KazAtomProm은 Inkai(KazAtomProm-Cameco Corp. 합작), Zarechnoye(KazAtomProm-MinAtom Russia-KaraBalta Kyrgyzstan 합작), UKR-TVS(KazAtomProm-

4) 2004년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생산량은 3,719톤으로 전세계 공급량의 9.4%를 차지하여 캐나다(29.2%), 호주(22.6%)에 이어 세계 3위

MinAtom Russia-MinTop Ukraine) 등 다국적 우라늄 합작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확정 및 추정매장량은 165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KazAtomProm은 2004년 3,363톤의 우라늄을 생산했으며, 2005년 전년대비 30% 증가한 4,300톤을 생산함.
- 2005년 5월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합작사 설립을 통해 2010년까지 연간 1,000톤의 우라늄을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
- 일본의 우라늄 확보 노력도 활발
 - 2005년 9월 Itochu Group은 KazAtomProm과 장기(10년) 우라늄 매입 계약 체결
 - 2006년 1월 KazAtomProm은 카자흐스탄 남부의 West Mynkuduk 우라늄 광산(추정매장량 18,000톤) 개발을 위해 Sumitomo, Kansai Electric Power와 합작계약을 체결⁵⁾. 2007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연간 1,000톤의 우라늄을 생산하여 일본에 전량 수출 예정

(8) 크롬

- 국영기업 Kazkhrom(정부가 31.37%의 지분 보유)은 크롬의 매장량⁶⁾

5) 합작사인 APPAK LLP의 자본금 총 1억 달러에 대해 KazAtomProm, Sumitomo, Kansai가 각각 65%, 25%, 10%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함.

6) 세계 크롬 매장량의 2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140년 간 생산할 수 있는 양임.

및 생산량이 세계 제2위이며, 페로크롬(생산량 세계 제3위), 크롬금속, 고품위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콘 크롬, 저인산 실리코망간 등도 생산

- Aktyubisk 지역(구소련 최대 크롬 산지)에 Donskoi 크롬 채광단지와 Ferrokhrom 페로합금 작업장, Pavlodar 지역에 Aksu 페로합금 제련소를 보유

IV. 석유산업 정책과 개발단계별 주요내용

1. 주요 관련 법률

- 지하자원법('92년 제정, '99년 개정)
- 외국투자법('94년 개정)
- 조세 및 기타 의무부과금에 대한 법('02. 1)
- 석유법('95년 제정, '99년 개정)
- 생산물분배계약법('05. 7)

2. 석유산업 정책

-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7년에 '에너지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고, 석유개발과 관련하여 2003년 6월 '카스피해 개발 계획(Caspian Development Program)'을 발표
 - 해상유전 개발 가능지역을 120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하여 원유 생산량 300만b/d이 목표
- 원유의 수송과 수출대상 국가는 과거 구소련 중심에서 중앙아시아 인근 국가들로 전환 중
 - 중앙아시아에서 코카서스, 흑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TRACECA

(Transport System Europe-Caucasus-Asia) 프로그램을 '93년부터 추진하는 등 동·서 석유수송망 확충을 위해 노력

□ 제도적인 부문에서는 석유기금 신설, 석유개발 세제 및 로열티 지급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안정화 도모

-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이 재정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석유기금(National Fund) 신설

3. 개발단계별 주요내용

(1) 계약체결 방법

□ 원유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계약체결방법은 조광권 계약 (Royalty/Tax Regime)과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PSA)의 2가지

- PSA 하에서는 개발사업자가 규정된 세금을 납부함과 아울러 정부 당국에 생산물 중 일정 비율을 양도

□ 2005년 7월에 도입된 PSA법은 역외(가스피해와 아랄해) 사업인 경우에 적용

□ 석유법, 지하자원법, PSA법에 따르면 자원개발에 정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2002년 승인된 '석유계약의 정부지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부가 입찰하는 석유광구 개발관련 프로젝트에 국영기업인 KazMunaiGaz가 최소 5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

<표IV-1> 석유·가스전 생산물분배계약 비교

	1995년 PSA			2005년 이후 PSA
기간				
채굴 생산	3년 20년 + 10년(연장)			6+2년 25년
서명 보너스	다양			다양
발견 보너스	다양			다양
생산 보너스	다양			-
로알티 (단위: 배럴/원유 백만 ft³/가스)	석유	가스	로알티(%)	면제
	25,000	150	3	
	50,000	300	5	
	75,000	450	7	
	100,000	600	10	
	100,000+	600+	17	
비용환급 상한선 (CRL)	60%			75%(Payback 이전) 50%(Payback 이후)
생산물분배	석유(BOPD)	투자자 지분(%)		1. R-factor 2. IRR 3. P-factor
	20,000	60		
	40,000	50		
	60,000	40		
	100,000	30		
	100,000+	20		
제 세	30%(법인소득세) \$0.3/bbl (물품세) 1%(재산세) sliding (수출임대세)			30%(법인소득세) 면제 면제 면제
	총내부수익율		세율(%)	면제
	20% 미만		0	
	20~25%		30	
25% 초과		50		

(2) 탐사(Exploration)

- 권리의 형태(Types of Right): 탐사계약(Exploration Contract)을 체결한 자에게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
- 기간(Duration): 탐사 기한은 통상 6년이며, 2년 이상 연장이 가능하고 기한의 갱신은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가능
- 양도(Relinquishment): 양도 가능
- 탐사의무(Exploration Obligations): 정부가 입찰조건의 하나로 제시하는 최소작업 프로그램은 계약발효 후 협의된 기간 이내에 개시
 - 탐사작업이 동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실질 작업량이 최소 작업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다음 단계로 이월되는 것이 일반적
- 보너스 및 수수료(Bonuses and Fees)
 - 최소 서명보너스(Minimum signature bonuses)규모는 입찰위원회(Tender committee)에서 결정하는데, 탐사광구의 경우 통상 50만 ~200만 달러이고 최고 연 25%의 비율로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PSA 하에서는 회수 불가능
 - 발견 보너스(Discovery bonuses)는 2002년 수정 세법 292조에 따라 확인 가채매장량 가치의 0.1%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⁷⁾, 서명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PSA 하에서는 회수되지 않으나, 자본화하거나

7) 최근 체결된 계약의 경우 발견보너스는 원유 1백만 톤(약 7.3백만 배럴)당 5만달러를 기본으로 함.

연 25%로 감가상각 가능.

- 교육훈련비(총투자액의 약 1%)와 다른 부과금은 협상 가능
- 임대료(Rental): 석유와 관련된 임대료는 없지만, 계약자는 토지사용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공제 가능. 단, PSA 계약은 토지세 면제

(3) 생산(Production)

□ 권리형태: (Types of Right) 탐사단계와 마찬가지로 계약자에게 상업적 가치가 있는 원유를 개발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 부여

□ 기간(Duration)

- 생산라이센스의 경우 기한은 통상 25년이나 가채매장량의 규모가 원유 1억톤(730백만 배럴) 혹은 가스 1,000억 m³을 초과하는 경우 45년까지 가능하며, 기한 연장은 만료일 12개월 전에 사전 신청
- PSA법은 생산만 하는 경우 25년, 탐사 및 생산을 병행할 경우 35년, 특정 매장지역에 대해서는 45년의 권리 기한을 부여.

□ 보너스 및 수수료(Bonuses and Fees)

- 생산 보너스는 1998년 7. 1차 개정 시까지 1995년 세법에서 지하자원개발자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 부과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러한 보너스 납부의무는 개정된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과거 대부분의 계약들은 보너스 지급이 누적생산보다는 일일생산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

- 협의된 교육훈련비와 다른 부과금은 납부 의무화

□ 임대료: 탐사단계와 동일

□ 상류(Upstream) 석유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의무사항

- 세금 및 납부(Tax & Payments)

<표Ⅳ-2> 계약형태별 세금납부내역

세금 구분	세 금	계약형태	
		Royalty/Tax	PSA
지하자원 개발자만 해당	보너스(Bonuses)	납부	납부
	로열티(Royalty)		면제
	초과 이익세(Excess Profits Tax)		
	수출임대세(Export Rent Tax)		
	PSA 지하자원 개발자 지급	면제	납부
일반	소득세(Income Tax)	납부	납부
	사무소 이익세(Branch Profits Tax)		
	배당 원천세(Dividend Withholding Tax)		
	이자 원천세(Interest Withholding Tax)	거주자 은행앞 지급은 면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납부(선별적으로 면제)	
	물품세(Excise Tax)	1999년 1월 이후 면제	면제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s Tax)	납부	
	재산세(Property Tax)		
	토지세(Land Tax)		
	교통세(Vehicle Tax)		
	경매세(Auction Sales Tax)		
	도로사용세(Road Use Tax)	1999년 4월 이후 폐지	
	사회세(Social Taxes)	납부	납부

- 기타 부과되는 세금

<표IV -3>

기타 부과세금

납부 항목	계약형태	
	Royalty/Tax	PSA
수입세(Import Duty)	1998년 4월이후 면제	
수출세(Export Duty)	1996년 7월이후 면제	
환경 기금(Environmental Funds)	납부	납부
기타 기금(Other Fund Payments)	납부	납부

- 로열티(Royalty): 지하자원 개발자에게 부과된 특별한 부과금으로서 2005년까지는 PSA와 비PSA 하의 모든 지하자원 개발자에 대해 납부의무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에 세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PSA 계약 하에서의 로열티 납부의무 폐지

<표IV -4>

로열티 기준

생산 증가분			로열티(%)
원유 생산		천연가스 생산 ^{주1)}	
100만 톤/년	천 배럴/일 ^{주2)}	100만 ft ³ /일 ^{주3)}	
0~0.5	0~10	0~56.5	2.0
0.5~1.0	10~20	56.5~113	2.5
1.0~1.5	20~30	113~169.5	3.0
1.5~2.0	30~40	169.5~226	3.5
2.0~2.5	40~50	226~282.5	4.0
2.5~3.5	50~70	282.5~395.5	4.5
3.5~4.5	70~90	395.5~508.5	5.0
4.5~5.0	90~100	508.5~564	5.5
5.0 초과	100 초과	564 초과	6.0

주 1. 원유와 함께 생산된 천연가스는 1,000m³ = 0.857 배럴에 상당하는 원유로 전환.

주 2. 1년은 365일, 1MT(metric tonne)은 7.3배럴로 가정

주 3. 35.3ft³는 1m³로 가정

- 로얄티는 계약조건에 따르나 개발기간 동안의 누적생산량에 따라 적용(sliding scale basis). 정부가 지급비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자가 내부수익율(IRR), 리스크와 필드의 복잡성에 따라 협상 가능
- 로얄티는 소득세, 초과이익세, 원천세 등 납부시 공제항목으로 인정

□ 환급가능 비용(Recoverable Costs)

- F/S와 조사, 평가, 탐사 작업에 선지급된 비용
- 특별히 제외된 경비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동안 지하자원 개발자가 지급한 경비

□ 환급불가능 비용(Non-recoverable Costs)

- 광권의 구입을 위해 입찰에 참여한 수수료
- 데이터 구입비용
- 특별한 품목에 대해 원유 계약에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경비
- 지하자원 개발자가 계약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한 결과로 발생한 경비
- 대출이자
- 법률비용
- 사회적인 프로젝트 비용
- 종업원 보험 비용
- 지하자원 사용에 대한 일시납부액 및 발견 보너스
- 정부예산에 따른 세금 및 의무납부금
- 계약자의 과실 사고로 인한 손실

- 정부조직에 의해 지하자원 개발자에게 부과된 벌금과 이자
- 계약 활동과 관련없는 경비

□ 비용 환급

- 비용은 양자간 협상된 연간 비용환급 상한선에 따라 환급되는데, 환급비율은 종전에 45~75%이었으나 최근에는 70% 수준이며, 2002년 세법에 따라 사전 환급액(pre payback)은 75%, 사후 환급액(after payback)은 50% 이내로 제한

□ 이익 분배 계약(Profit Sharing Agreement)

- 생산물분배계약의 기본구조는 여타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되는 석유·가스의 판매수입 중 로열티를 지급하고 투자비를 회수한 후 잔여 이윤생산물을 투자자와 정부가 계약체결시 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관련세금을 납부한 후의 순이윤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법으로 계산
- 수익성 요소(R-factor): 자원개발자의 축적된 실질 소득(실질 총소득세보다는 적음) 대비 축적된 비용환급 경비의 비율.

<표IV-5>

R-factor 계산식

R-factor	계약자의 이익분배(%)
1.2 이하	70
$1.2 < R < 1.5$	$[70\% - \{2.068 * (X - 1.2)\} * 100\%]$
1.5 이상	10

주: 변수 X는 이익분배기간동안 R-factor(소수 둘째자리까지)의 실질가치.

- 내부수익율(IRR):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가 제로(0)인 연간 할인율

<표IV-6> 내부수익율 계산식

IRR	계약자의 이익분배(%)
12 이하	70
$12 < IRR < 20$	$[70\% - \{7.51 * (X - 12\%\)]$
20 이상	10

주: 변수 X는 이익분배 기간동안 IRR(소수 둘째자리까지)의 실질가치.

- 가격 요소(P-factor): 자원개발자의 비용과 이익의 배분 대비 생산된 석유의 가치에 대한 비율

<표IV-7> P-factor 계산식

P-factor(US\$/배럴)	계약자의 이익분배(%)
12 이하	70
$12 < P < 27$	$[70\% - \{0.04 * (X - 12)\} * 100\%]$
27 이상	10

주: 변수 X는 이익분배 기간동안 P-factor(소수 둘째자리까지)의 실질가치.

□ 과세(Taxation)

- 소득세는 1995년 4월 '세금 및 다른 의무지급사항' 2235조의 적용을 받으며, 1995년 이래 표준 소득세율은 30%
- 그러나 터키의 국영석유기업인 TPAO의 1994년 KazakTurkMunai 계약은 1994년 1월 이전의 일반세율이었던 25%이고 Agip KCO's North Caspian Sea 계약은 변동세율(투자자의 IRR 20%까지는 30%, IRR 30% 이상은 60%) 적용

□ 공제 및 감가상각(Deduction and Depreciation)

- 과세소득을 발생시킨 모든 경비 중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공제 가능
- 토지, 사인 보너스 비용, 세법에 규정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비용, 재고자산, 소유권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표IV-8> 감가상각표

자산 분류	최대 감가상각률(%/년)
건물, 구조물	8
석유 및 가스 광구	20
석유 및 가스 저장 장치	10
내부 가스 파이프라인	8
전력 발전기계 및 장비	15
석유 정제 및 화학 장비	20
석유와 가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	20
주 파이프라인, 대중 교통	15
컴퓨터, 데이터 전송 장비, 주변 장치	30
여타 고정자산(무형, 사무실 가구, 복사기)	15

☐ 초과 이익세(Excess Profits Tax)

<표IV-9> 초과 이익세율표

누적 공제액에 대한 누적 소득의 비율	초과 이익세율(%)
1.2 미만	0
1.2~1.3	10
1.3~1.4	20
1.4~1.5	30
1.5~1.6	40
1.6~1.7	50
1.7 초과	60

주: 공제는 로얄티, 운영경비, 자본지출, 소득세, 전년도에 초과 이익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 수출임대세(Export Rent Tax)

<표IV-10> 수출임대세 율표

시장 가격 (배럴당)	비율(%)
US\$19 미만	0
US\$19 ~ US\$20	1
US\$20 ~ US\$21	4
US\$21 ~ US\$22	7
US\$22 ~ US\$23	10
US\$23 ~ US\$24	12
US\$24 ~ US\$25	14
US\$25 ~ US\$26	16
US\$26 ~ US\$27	17
US\$27 ~ US\$28	19
US\$28 ~ US\$29	21
US\$29 ~ US\$30	22
US\$30 ~ US\$31	23
US\$31 ~ US\$32	25
US\$32 ~ US\$34	26
US\$34 ~ US\$36	28
US\$36 ~ US\$37	29
US\$37 ~ US\$38	30
US\$38 ~ US\$40	31
US\$40 초과	33

□ 원천세(Withholding Tax): 배당금과 이자는 15%이고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감소 가능

□ 토지세(Land Tax): 공업, 농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토지의 가치에 따라 헥타르당 25~5,000 Tenge의 세금을 부과

- ☐ 자산세(Property Tax): 감가상각이 가능한 모든 유무형 자산의 1%를 부과하며, 소득세 목적으로 공제 가능.
- ☐ 물품세(Excise Tax): 1999년 1월 이후에 생산된 모든 원유(컨덴세이트와 액상 천연가스 포함)는 물품세 면제
-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세율은 현재 14%(2008년은 13%, 2009년은 12%)이며,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품과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

V. 외국인 투자환경

1. 외국인 투자정책

□ 관련 법률

- 투자법(Law on Investments, 2003. 1. 8 제정, 2005. 5. 5 개정)
- 세법(Tax Code, 2001. 6. 12)
- 투자법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on certain matters pertaining to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vestments, 2003. 5. 8)
- 유한 · 추가책임합작회사법(Law on Limited and Additional Liability Partnerships, 1998. 4. 22)
- 주식회사법(Law on Joint Stock Companies, 2003. 5. 13)
- 정부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s)과 직접투자지원법(Law on State Support for Direct Investments)을 통합하여 2003년 1월 신투자법을 공포
 - 신투자법은 내 ·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함과 아울러 우선 투자분야 지정, 세제 혜택, 분쟁 발생시 중재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보완

<표 V-1> 신투자법(2003. 1.8일자)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비고
내·외국인 구분폐지	- 구 외국인 투자법 폐지 - 투자자를 내외국인 구별없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개인, 법인으로 규정	1조 6항
투자법 지위 약화	- 구법의 예외사항을 없애고 기타 법규에 우선 적용 조항 삭제 - 투자 이행상 카자흐스탄의 타법률에 영향을 받는 사항에 대한 동법의 적용 배제 -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투자운영과 관련 카자흐스탄 관련 법규를 직접 적용	2조 3항
국유화 및 수용 관련 투자 보장 약화	-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보상은 존속 - 구법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카자흐스탄 법률에 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	
환경 안정성 보장조항 변경	- 구법에서는 법률변경에 의한 투자자 지위 약화시 투자 당시 법률 최소 10년 적용 규정	4조 3항
투자 안정성 보장조항 변경	- 신법은 국익, 환경보호, 보건, 사회 풍속 관련 등 법규 변경시와 물품의 수입, 제조, 판매 절차 및 조건 관련 법규 제정시 보장 예외를 명시 - 구법상의 신속정확하고 효과적인 보상에 관한 투자자의 권리보장조항 삭제	
우선투자분야 지정 및 우대 부여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부 우선투자분야 지정 - 우선투자분야에만 관세, 조세 등 혜택을 부여 - 조세, 관세의 우대기간을 5년으로 한정	
투자 분쟁 중재	- 투자분쟁의 경우 당사자 합의시 국제 중재기관 제소 가능 조항 존속 - 투자분쟁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은 여타 카자흐스탄 국내법에 따르도록 규정	
외환 관련	- 구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외환의 지체없는 국내외 이전보장 조항 삭제	

자료: KOTRA.

□ 법인설립 형태

- 외국인투자자는 100%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법인, 국내기업과의 합작 법인 또는 지점·대표사무소 등 제한적 기능을 가진 조직 설립 가능
- 지점 및 대표사무소는 단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는 모회사를 대신한 계약체결 등 극히 부수적 활동만 허용. 외국인 소유법인의 국내지점은 영업활동 등 모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 수행 가능
- 법인은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JSC) 등으로 구분

2. 외환제도

□ 일반적으로 외국환관리 관련 규정은 엄격하지 않은 편

- 법정통화인 Tenge화는 1993년에 도입되었고, 중앙은행은 1999년 4월 환율자유화 조치(변동환율제)를 단행하였는데 2007년 10월말 현재 환율은 미달러당 120.86 Tenge 수준이며, 최근 오일달러 유입으로 Tenge화는 강세
- 2003~04년 외환 관련규정 개정 방향:
 -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투자등급을 부여받은 비거주자 채권 등에 대한 거주자의 투자를 허용
 - 국내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차관 제공시 허가제 폐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거래 제한(1996. 12 도입) 철폐
- 거주자의 외국은행 계좌개설 요건 완화

□ 주요 법규

- 2005년 12월에 외환법(currency law)이 공포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로 일부 외환관리 조건 및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등 카자흐스탄은 국제금융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주요 외환규제 내용

(1) 거주자에 대한 규제

-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지급수단은 자국 통화
- 거주자의 외환수취는 허가된 은행·금융기관 계좌를 이용
- 거주자 법인의 국내 외환 매입요건
 - 비거주자에 대한 대금지급 또는 은행송금, 외화대출금 상환, 기타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2) 비거주자에 대한 규제

- 외환거래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지점,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등에 대한 외환규제는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
- 외화구입을 위한 국내 Tenge화 대출 금지
- 비거주자 법인은 경상외환거래로부터 수취하는 Tenge화의 교환을 위한 외환매입 가능

(3) 중앙은행의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외환거래

- 거주자의 해외소재 은행계좌 개설
- 거주자의 외국법인 취득지분이 전체지분의 10% 미만이며, 투자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취득지분이 전체지분의 10% 미만이며, 투자금액이 6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180일이 경과된 이후 거주자의 수입대금 지급 및 180일이 경과된 후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수취
- 상환기간 180 일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대출
- 합작기업 설립 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 양도를 위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 지급
- 거주자의 법인 취득지분이 전체지분의 10% 이상인 경우

(4)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계좌 개설

-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인가된 은행에 외환계좌 또는 국내 통화계좌 보유 가능
- 비거주자는 중앙은행 허가를 받아 외국계은행에 외환계좌 또는 국내 통화계좌 보유 가능

3. 조세제도

□ 조세제도는 대체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

<표 V-2>

주요 세제

세 제	세 율	비 고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30%(주요 생산자산이 토지인 경우 10%)	PE: 국내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과세
지점수익세 (branch profit tax)	15%(이종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5%까지 축소 가능)	과세대상은 PE의 종합소득에서 법인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부가가치세(VAT)	14% (토지 및 주택의 임대·매매, 특정 금융서비스, 탐사·탐광 작업, 정관자본금에 대한 투자, 특정 의료기기 수입, 민영화를 통한 자산 매각 등: 0%)	08년(13%), 09년(12%) 인하 예정
원천세 (withholding tax)	- 거주자: 이자 및 상금 15% - 비거주자 • 배당금 및 이자: 15% • 보험료: 5~10% • 교통서비스료: 5% • 세법 178조 소득: 20%	
사회보장세 (social tax)	- 외국 관리자, 엔지니어 기술자: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11% - 카자흐스탄 국민: 최대 20%	(08년 부터 최 소 13%로 인하 계획)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10% (배당소득 5%, 이자 및 상금소득 10%)	
연금세(pension fund)	10%	
재산세(property tax)	1%	비영리 기관: 0.1%
토지세(land tax)	품질, 위치, 용수공급 여부에 따라 상이	
물품세(excise tax)	세금법 259조에 근거하여 상품의 비용 및 양에 따라 결정	
교통세 (tax on vehicles)	운송수단, 엔진 형태, 운영기간에 따라 결정	트레일러를 제외한 교통수단에 대해 부과

- 기본법은 세법(Tax Code, 2001. 6. 12), 기타 법령, 조세조약 등으로 비거주영속기업(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통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내·외국 법인은 세무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2007년 1월 1일부로 비거주영속기업이 없는 외국기업의 등록은 불가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2007년 11월 현재 총 37개국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1999년에 협정을 체결하여 배당금, 이자수익, 로얄티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표 V-3> 카자흐-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내용

배 당 세	이자수익세	로얄티세	지점수익세
지분 보유율≤10%: 5%	10%	10%	-
지분 보유율>10%: 15%			

4. 노동제도

(1) 개 요

- 내·외국인 고용은 노동법(Labour Law, 1999. 12. 10)에 근거하고 있으나, 의회는 조만간 근로자의 권리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8)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헝가리, 인도, 이란, 이탈리아, 한국,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노동법(Labour Code)을 도입할 전망

- 일반적으로 국내외 기업의 고용주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2001년 1월 제정된 고용법(Law on Employment of the Population, 2001. 1. 23)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해고 계획 등을 노동부 산하기관인 지방 고용센터(local employment centre)에 통지할 의무

(2) 노동조건

- 2007년 기준 법정최저임금은 월 9,752 Tenge(약 80달러)이나, 고용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통상 급여는 이를 크게 상회
- 근로시간
 - 정규 노동시간: 주 40시간
 - 초과 노동시간은 일 2시간 이내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률의 150%,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률의 200%를 지급
- 휴가
 - 법정휴무일: 8일
 - 유급휴가일수: 최소 18일
 - 병가: 일시적인 병이나 장애로 인한 병가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월 90달러 수준의 병가수당을 지급
 - 출산휴가: 126일 이내(특정한 경우에는 140일)의 출산휴가에 대해

고용주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표 V-4> 카자흐스탄의 업종별 월 급여 수준(2007.8월 기준)

업 종	급 여	
	Tenge	달러
전체 평균 ^{주)}	54,253	457.91
농업, 임업	24,186	204.14
수산업	22,732	191.86
광업	99,117	836.57
제조업	55,954	472.27
전력·가스·수도 생산업	45,861	387.08
건설업	75,608	638.15
무역업, 도·소매업	50,494	426.18
호텔, 요식업	59,190	499.58
운송, 통신업	75,367	636.12
금융업	114,783	968.80
부동산, 임대업	78,995	666.74
행정	48,153	406.42
교육	31,400	265.02
의료, 사회사업	33,492	282.68
지역, 사회복지 등	51,619	435.68

주: 소규모 기업은 제외, 2007년 11. 15 현재 환율 적용(미달러당 122.57 Tenge).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3) 노동관계

- 고용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종료기간의 설정 가능. 기한부 고용계약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될 수 없으나, 계절적 특성

을 갖는 노동, 한시적 프로젝트, 당사자간 합의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고용계약기간의 한정 가능

- 고용계약은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에는 고용자가 통보없이 고용계약을 종료 가능
- 노동 종료를 위한 법정사유는 잉여인력 발생, 피고용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 피고용자의 자질이 임무수행에 부적격한 경우, 무단결근, 절도 등이며, 잉여인력 발생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1개월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

(4) 외국인 고용

- 고용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2001. 6. 21)에 따르며, 2000년 8월 이후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work permit)에 쿼타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허가 발급 건수는 카자흐스탄 경제활동인구의 0.8%인 약 58,000건으로 추정
-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시에 노동부의 별도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사무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은행, 보험사, 정부와 5,0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출장을 목적으로 국내에 60일 이하의 기간동안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취업허가 없이 카자흐스탄에 체류 가능

(5) 소득세, 사회보장세, 연금 납부

- 고용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5~30%의 소득세, 총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및 연금을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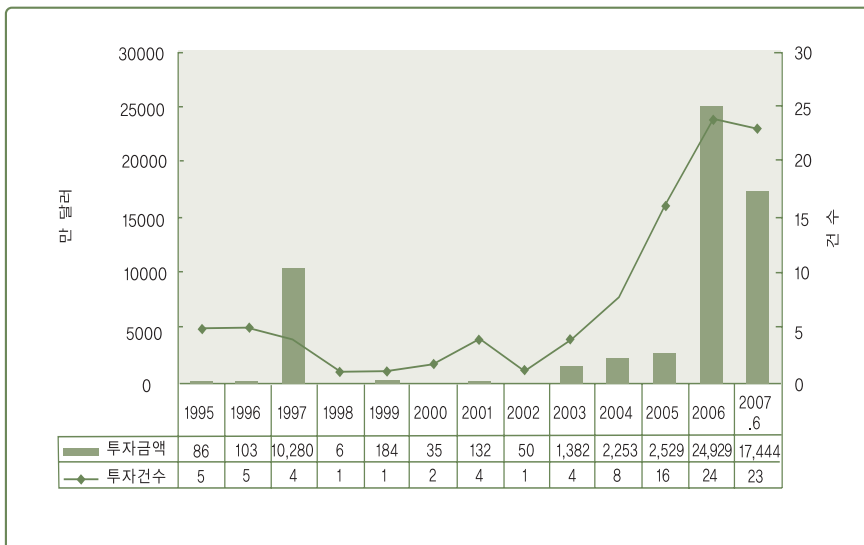
Ⅵ. 우리기업의 투자현황 및 진출방안

1. 우리나라의 투자현황

(1) 카자흐스탄에 대한 해외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200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06년 24건, 2억 4,929만 달러, '07년 6월 현재 23건 1억 7,444만 달러로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6월말 현재 투자기준으로 누적 투자건수는 105건, 투자금액은 6억 26만 달러

<그림 VI-1>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투자현황은 '07년 6월 말 현재 누적액 기준으로 건설업이 2억 2,692만 달러(37%)로 가장 많고 부동산업 1억 3,966만 달러(23%), 광업 3,501만 달러(6%), 제조업 2,709만 달러(5%) 등의 순

- 미국, 영국 등이 석유 및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건설, 부동산, 도소매, 물류 관련기업이 많이 진출
- 대표적인 투자로는 우림건설의 알마티 애플타운 건설사업, 동일하이빌의 아스타나 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 성원건설, 현진에버빌, 한성건설 등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사업 등이 있으며, 제조업체로는 세원중공업의 압력용기 생산공장, 대우전자, LG전자 가전법인, 우진트랜드, 서중물류 등 물류업체들의 진출이 활발

(2) 자원개발 투자현황

<표 VI-1> 우리기업이 참여한 카자흐스탄 유전 현황

참여사	광구명(지분)	추정매장량 (억 배럴)	지분감안시 (억 배럴)	진행상황
석유공사, SK, LG상사, 삼성, 대성	Zhambyl(27%)	10	5(선매권 23%포함시)	시추작업중
석유공사, LG상사, Kang LLP	ADA(50%)	1.7	0.85	시추작업중
SK, LG상사	Block8(100%)	2.5	2.5	시추작업중
세림제지, KS에너지	West보조바 (50%) 사크라마바스(50%)	2 1.6	1 0.8	
LG상사, 석유공사	Yegizkara(50%)	2.1	1.05	물리탐사
석유공사, GS홀딩스	South	4.2	2.1	진행중

-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삼성물산의 동광석 채광 및 제련사업, 세림제지의 원유탐사사업 등이 있으며, 석유공사, LG상사, SK 등이 지분참여의 형태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 중

- 주요 자원개발 사업

- 잠빌(Zhambyl) 광구

- 2004년 3월 제1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원회에서 광구 개발에 대한 MOU가 체결되고 2006년 9월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KMG)간에 한국이 우선 KMG의 지분 중 27%를 인수하고 탐사 성공시에 추가로 23%의 지분 인수권을 부여하는 계약(지분양수도 합의 의정서)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4월에 탐사계약안을 제출
 - 국영 KazMunaltGaz와 한국컨소시엄이 각각 73%, 27%의 지분을 보유하여 공동운영. 한국컨소시엄 지분구성은 석유공사 35%, SK(주) 25%, LG상사 20%, 삼성물산 10%, 대우조선 5%, 대성산업 5% 등
 - 동 광구는 우리나라 석유소비량의 약 1.2년분에 해당되는 10억 배럴 규모로, 선매권 23%까지 고려할 경우 유전 발견시에는 최대 5억 배럴 상당의 원유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아다(Ada) 광구

- 아다 광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Ada LLP)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컨소시엄은 석유공사와 LG상사, Kang LLP가 각각 22.5%, 22.5%, 5%씩 참여

-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아다광구 내 바센콜 구조에서 첫 번째 탐사정 시추 결과 양질의 원유를 발견하였고, 금년 10월 현재 바센콜 구조 평가정 3공을 비롯한 총 6공의 시추작업이 진행 중이며 바센콜 구조 및 자나탄 구조는 2009년 본격 생산이 가능할 전망

○ 예기즈카라(Yegizkara/Egizkara) 광구

- 한국전소시업은 석유공사와 LG상사가 각 25%씩 총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탐사를 본격화하여 2009년 이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우라늄 개발

-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2010년까지 2,350톤 규모의 우라늄 정광을 수입하고, 신규 우라늄 광산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

2. 진출시 강점 및 약점

(1) 강점

- 정치·사회적 안정성, 연 9% 대의 높은 경제성장, 원유·가스·광물 등 풍부한 지하자원,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 등
- 국토 면적이 남한의 27배, 한반도의 13배에 달하고,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며 러시아, 중국 등 대형 시장에 근접
- CIS 국가 중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하고, 금융·법률·회계 서비스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CIS 진출거점으로서 활용 가능

(2) 약점

- CIS 국가 중 임금, 임대료, 토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 수에 비해 적은 경제활동인구
- 내륙에 위치하여 제조업의 발전이 미미하며 주요 생필품은 중국제, 고급품은 유럽제가 장악
- 석유, 가스 등 에너지가격 강세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나, 에너지가격 하락시 이를 대체할 제조업 등 내수 기반산업이 취약

3. 우리의 진출방안

(1) 중소형 광구의 지분권에 관심 필요

- 독립 이후에 매각하였던 대형 광구에 대해서는 최근 ‘전략적 광구’라는 명분으로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소형 광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적은 자본으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메이저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영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카스피해 광구의 지분권 매입에 관심 필요
- 다만 일부 기업의 무분별한 자원개발 참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KNOC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함

(2) 광권 지분의 매매도 투자의 형태임을 인식

- 정부국영석유공사(KMG)가 정부로부터 광권을 위임받아 입찰을 실시하는데, 일단 개인기업이나 기업에 이를 분양한 후 이들이 다시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진행
 - 특히 육상광구는 정부에서 입찰공고 후 일반에 매각하며, 탐사단계의 소요자금은 외국회사가 부담
- 투자 초기에는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광권을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의 경우처럼 광권을 재매각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방법도 가능

(3) 카자흐스탄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에 관심 필요

- 카자흐스탄 투자청에 따르면 7대 유망 투자분야는 제철(가라간다주), 운송, 방직(남부, 우즈벡 인접), 건축자재(아스타나), 식품가공(과일은 남부, 밀은 중부, 유제품은 북부), 관광, 석유관련 중장비 분야
- 정부는 제조업 기반의 육성을 위해 석유화학, 전력, 도로망 구축 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사업추진도 기존의 BOT 방식에서 점차 사업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4) 건설 기자재, 의료, 식품 및 금융 서비스 시장 진출 필요

- 건설 등 부동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한국 기업들의 아파트, 오피스텔 건설이 활발하므로 내장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등 건설 기자재 및 관련시장에 진출할 필요

- 내륙국으로서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카자흐스탄은 물론 주변국의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물류비 부담이 적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가전, 의류, 식품 가공, 물류 산업 위주로 진출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
- 중앙아시아 CIS 국가 중 가장 자본주의가 진전된 국가로서 국가 차원에서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알마티에 국제금융 센터를 건설하고 있어 향후 중앙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전망

4. 진출시 유의사항

(1) 정부의 선취권 행사

중국 CITIC의 카자흐 석유기업 인수시 정부의 제동 사례

- 2006년 10월, 중국의 중국투자신탁회사(CITIC)는 카자흐스탄의 석유기업인 Karazhanbasmenai의 지분 중 94.6%를 보유하고 있던 캐나다의 Nations Energy를 19억 1000만 달러에 인수한 후 정부에 거래 허가를 신청
- 카자흐스탄 정부는 CITIC이 Karazhanbasmenai의 주식 중 절반을 9억 5500만 달러에 카자흐의 국영석유가스회사인 KMG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 거래를 승인

- 원유라는 귀중한 자산이 저가에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구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정부의 선취권 행사
- 외국인 투자자가 광권을 매입할 당시에 설립한 역외 해외법인의 지분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도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2007년부터는 광권 매입 후 2년 동안은 매각 금지.

(2) 정부의 계약조건 변경권

□ 의회는 '07년 9월에 지하자원개발법(Subsoil Use Law)을 개정하여 '전략적(strategic) 광구로서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의 당초 계약에 대해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이탈리아 국영석유회사 ENI를 주축으로 한 Agip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이나라 최대의 Kashagan 유전 개발사업이 생산 개시시기가 당초 2005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개발비용이 150억 달러에서 1,36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데다 정부의 원유생산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 계기
- 생산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PSA 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비용보전(cost recovery)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예상하고 있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유전개발을 예상하여 수립하였던 재정 및 경제개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초래
- 정부는 ENI가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Shell, ExxonMobil, Total 등)에 대해 400억 달러의 보상, ENI의 역할 축소와 아울러 및 자국

의 국영석유회사인 KMG를 프로젝트의 제2운영사로서 인정할 것을 요구

- 정부는 현재 '전략적 광구'에 대한 정의를 검토 중인데, Kashagan 유전과 같은 대형 유전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과거에 헐값에 매각한 광구를 되찾을 목적으로 이를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상존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 고조

(3) 환경오염과 관련한 정부 규제

- 투자기업이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업 중단은 물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카자흐스탄 정부는 '07. 8월 환경문제를 이유로 PSA에 근거해서 Agip컨소시엄에게 허가하였던 면허를 3개월간 중지 조치

(4) 광권 가격의 상승으로 신규 광권매입의 이점 감소

-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육상광구는 정부로부터 광권을 최초로 위임받은 국영석유회사(KMG)가 이를 외국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 일단 개인이나 기업한테 분양한 후 이들이 다시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진행
- 육상광구는 대부분 조광권(Tax/Royalty) 계약을 체결하며, 개발까지의 비용을 외국인 투자자가 부담하고,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면 초과이익세(Excess Profits Tax), 수출입대세(Export Rent Tax) 등을 부담

- 육상광구를 매입하는 경우 최근에는 매입가격이 원래 매각가격보다 10배 이상 상승하여 개발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많지 않으며, 최초 매입하였던 메이저 석유기업들도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매각 차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

(5) 탐사(시추) 관련 각종 정부 규제

- 환경 영향 평가, 생태 영향 평가가 필수이며 관련 용역회사를 통한 평가 및 해당지역 간담회(설명회) 개최는 필수조건
- 물리탐사시 필수적인 자료는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 불가피
- 관련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구 소련시절 작성되어 단위 척도가 다르고, 통계 측정치가 현재와 상이하여 서방 기술자도 적용하기가 어려운 수준

(6) 해당 지방정부의 별도 승인 필요

- 광권 계약서상의 의무작업량과는 별도로 해당지역 정부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작업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고장 발부 또는 최악의 경우 광권 박탈
- 석유개발을 통한 이익이 카자흐스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하며, 광권 계약상의 기부금(social obligation) 납부 조항과는 별도로 해당 자치주에 별도의 사회공헌기부금을 납부할 필요

(7) 높은 수준의 용역비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

- 국내 업체가 발주하는 용역(공사)와 외국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금액이 상이
-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지인을 고용하여 행정 및 광구 관리를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나, 현지인들이 투자자와 상의하지 않고 광구 지분권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매각하는 사례 발생

This map illustrates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of Central Asia, focusing o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its autonomous regions. The Karakalpakskaya ASSR is shown in the northwest, bordering the Aral Sea and Turkmenistan. The Khorezmskaya Oblast is located in the south, along the Amu Darya river. Major cities like Tashkent, Samarkand, and Bishkek are marked. The map also shows parts of neighboring countries: Turkmenistan to the west, Tajikistan to the east, and Afghanistan to the south. A legend in the bottom left corner defines the symbols used for boundaries, capitals, centers, and transportation. A scale bar at the bottom indicates distances in kilometers and miles.

Legend:

- Republic boundary
- Autonomous republic (ASSR) or oblast boundary
- Republic capital
- Autonomous republic (ASSR) or oblast center
- Railroad
- Road

An oblast is named only when its name differs from that of its administrative center.

Scale:

0 100 200 Kilometers
0 100 200 Miles

차 례

I. 정치·경제 현황

1. 일반 개황	81
2. 경제 동향	81
3. 정치·사회 동향	86

II. 에너지자원 현황

1. 매장량 및 수급 현황	88
2. 주요 광구 현황	89
3. 정유산업 현황	90
4. 주요 석유기업	93

III. 광물자원 현황

1. 광물자원 매장량	96
2. 광종별 현황	96

IV. 석유산업 정책 및 개발 동향

1. 석유산업 정책	100
------------------	-----

차 례

2. 석유개발 동향.....	102
-----------------	-----

V. 외국인 투자환경

1. 투자관련 법률.....	104
2. 외국인투자 조건	104
3. 조세제도	106
4. 노동제도	118
5. 외환제도	121

VI. 우리기업의 투자현황 및 진출방안

1. 우리나라의 투자현황.....	123
2. 진출시 강점 및 약점	128
3. 우리의 진출방안	129
4. 진출시 유의사항	131

표·그림 차례

<표Ⅰ-1> 주요 국내경제 지표	83
<표Ⅰ-2> 주요 대외거래 지표	84
<표Ⅱ-1> 원유·가스 수급 현황	88
<표Ⅲ-1>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96
<표Ⅴ-1> 세금 구분	107
<표Ⅴ-2> 원천징수세율	108
<표Ⅴ-3> 기업종류별 통합소득세율	109
<표Ⅴ-4> 고정자산 감가상각률	111
<표Ⅴ-5> 개인소득세율	112
<표Ⅴ-6> 사회보장세율	113
<표Ⅴ-7> 자원개발세율	115
<표Ⅴ-8> 지방정부가 적용하는 세율	116
<표Ⅵ-1>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	125
<그림Ⅱ-1>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처리시설 및 정유시설 현황	90
<그림Ⅱ-2> 우즈베키스탄 송유관·가스관 현황	92
<그림Ⅵ-1>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추이	123
<그림Ⅵ-2> 업종별 투자비율	124

I. 정치·경제 현황

1.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²	G D P	131억 달러(2006)
인구	266백만 명(2006)	1인당 GDP	492달러(2006)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um(숨)
대외정책	CIS결속, 친러 관계 강화	환율(달러당)	1,220(2006)

- 1991년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600만 명(중앙아시아 최대)으로서 면적을 비롯하여 금, 아연, 우라늄 등 각종 부존자원이 풍부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간섭과 통제,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개혁의지 부족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1인당 GDP 600달러 수준의 빈곤국

2. 경제 동향

(1) 경제 구조 및 정책

□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 1차 산업이 GDP와 고용의 약 1/3을 차지⁹⁾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효율성과 경쟁력이 매우

9) 2004년 기준, 세계은행 추정

낮고, 경제성장은 주요 수출품인 면화와 금의 국제가격 변동에 크게 좌우

□ 천연자원 개발 잠재력 양호

- 에너지 자원(특히 천연가스)을 자급자족하며 일부는 CIS 지역으로 수출. 독립 이후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 및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1991년의 420억 m³에서 2006년에는 620억 m³, 연간 석유 생산량은 1991년 280만 톤에서 2006년 540만 톤으로 증가
- 금은 세계적 매장량(매장량 세계 6위, 생산량 세계 10위권)을 바탕으로 면화에 이은 제2의 수출품(총수출액의 약 10~20%)이며 우라늄, 아연 등도 풍부

(2) 경제 정책

□ 개혁거부,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 경제자유화보다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을 고수하여 경제개혁 성과가 극히 부진
- 특히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외국인투자 부진 등을 초래함으로써 경제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에 악영향

(3) 국내경제

<표 I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 제 성 장 률	4.2	7.7	7.0	7.2	8.2
재 정 수 지 / G D P	0.1	0.6	1.3	0.4	-0.6
소비자물가상승률	11.6	6.6	10.0	19.8	16.0

자료: EU, Country Report, 각호.

□ 최근 7%대의 실질 경제성장률 기록

- 2대 수출품목인 금과 면화의 국제시세 호조에 힘입어 2004년 이후 7%대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2007년에도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러시아·중국의 투자 활성화, 금 및 면화의 국제시세 강세, 가스,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 등을 바탕으로 8.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 2005년 이후 해외유동성 증가에 따른 통화량 증가, 공공요금 및 임금 인상 등 인플레이 압박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크게 높아졌으며 2007년에도 대선을 앞둔 재정지출 증가, 수출 호조에 따른 외화 유입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는 대체로 균형 유지

- 국제 면화시세에 크게 좌우되는 재정수지는 최근 국제 면화가격의 상승으로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대통령 선거

를 앞두고 임금, 연금이 크게 상승한데다 국방, 치안 등 관련 지출도 증가하여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4) 대외거래

<표 I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 상 수 지	881	1,215	1,949	2,767	3,045
경 상 수 지 / G D P	8.7	10.1	14.3	17.3	15.7
상 품 수 지	835	1,202	1,447	1,920	2,010
수 출	3,240	4,263	4,757	5,690	6,580
수 입	2,405	3,061	3,310	3,770	4,570
외 환 보 유 액	1,659	2,146	2,895	4,300	5,600
총 외 채 잔 액	4,912	4,833	4,226	4,767	5,398
총외채잔액/GDP	48.6	40.2	31.0	29.8	27.9
D S R	25.0	20.4	16.6	17.1	15.0

자료: EIU, Country Report, 각호.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 상품수지는 금의 국제시세 상승 및 수입억제에 따라 꾸준한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근로자 송금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관 통과료 수입 등으로 경상수지도 흑자기조 유지
- 최대 교역상대국은 러시아(2006년 교역액의 약 25% 차지)로서 주로 자동차,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기계·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점차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중

□ 외국인투자 크게 부진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개혁·개방 의지 부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CIS 국가 중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부진한 국가 중 하나로, IMF는 2006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 누계액이 17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다만, 2004년 이후 석유·가스 및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가 동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외환보유액 꾸준한 증가 추세

- 국제 금시세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증대, 강력한 수입 및 외환통제 등에 힘입어 2006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3억 달러를 기록
- 중장기 채무(대부분이 정부보증 공적채무)가 총외채의 90% 이상이고 수출호조에 따라 외환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 불능이나 리스케줄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
- 주요 채권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며 동국의 개혁정책 부진 및 안디잔 사태로 IMF, 세계은행, EBRD 등과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

3. 정치 · 사회 동향

□ 카리모프, 강력한 독재체제로 장기집권 중

- 구소련 붕괴 이전인 1989년에 공산당의 대표로, 1991년 독립 이후에는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장악한 카리모프(I. Karimov)는 정치 및 경제자유화를 강력히 거부하며, 야당 등 반대파 존립근거 박탈, 언론·방송 장악, 외국 NGO 추방 등을 통해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
- 특히 1995년 대통령 선거를 취소한 국민투표, 2000년 대선, 2002년 대통령 임기 연장(5년→7년)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통해 심각한 부정선거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치체제 구축

□ 2007년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카리모프의 당선 유력

- 최근까지 12월 대선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의 향배가 불투명하였으나, 9월에 당국이 대선을 예정대로 실시하며 집권당이 카리모프를 후보자로 지명할 것임을 천명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
- 다만, 카리모프가 다시 집권한다 해도 고령(69세)과 건강상의 문제로 딸인 Gulnora와 재무장관 Azimov 등을 포함한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강화

-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의 석유·가스 및 통신 부문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안디잔 사태에 대한 카리모프 정권

의 입장을 옹호함에 따라 양국간 정치·경제·군사 관계가 최근 급속히 강화

- 2005년 5월에 동부의 안디잔에서 지역유지의 체포로 촉발된 평화적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자, 2003년 이래 주변국(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의 시민혁명의 파급을 우려한 카리모프 대통령이 직접 보안군을 지휘하며 강경 무력진압에 나서 유혈사태로 확대
- 중국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

□ 미국, EU 등 서방과는 여전히 소원한 관계

- 1990 년대에 대립하였던 미국과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지원을 위해 자국 내 공군기지를 제공하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나, 대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한 소극적 지원, 안디잔 사태를 계기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 등으로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
- 안디잔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거부, 영내 미군 공군기지 철수 등에 맞서 미국과 EU는 경제원조 중단, 안디잔 관련 고위 공무원의 해외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

II. 에너지자원 현황

1. 매장량 및 수급 현황

- 원유의 확인매장량은 6억 배럴,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66조 ft^3 으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¹⁰⁾
- 특히 천연가스는 생산량이 CIS 국가 중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제 3위, 세계적으로는 10위권
- 2006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5.4조 ft^3 , 소비량은 4.2조 ft^3 로서 생산량의 78%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일부만을 수출

<표 II-1>

원유 · 가스 수급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원유	매장량(10억 배럴)	0.6	0.6	0.6	0.6	0.6	0.6
	생산량(천b/d)	171	171	166	152	126	125
	소비량(천b/d)	135	130	148	134	139	143
가스	매장량(조 ft^3)	65.32	65.32	65.67	65.67	65.32	66.01
	생산량(10억 m^3)	53.6	53.5	53.6	55.8	55.0	55.4
	소비량(10억 m^3)	51.1	52.4	47.2	44.8	44.0	43.2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7.

10) 현재 상당부분이 미개발 상태로써 본격적인 탐사가 진행될 경우 매장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주요 광구 현황

(1) Kokdumalak 원유 · 가스 · 컨덴세이트전(최대 생산유전)

- '89년에 생산을 개시한 Kokdumalak 원유 · 가스전은 우즈벡 남부 Amudarya 분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나라 전체 원유 중 매장량의 1/3 이상, 생산량의 약 70% 점유
- 확인매장량은 원유 4억 배럴, 가스 5.4조 ft^3 , 컨덴세이트 5억 4,000만 배럴이며, 잔존 매장량은 원유 1억 6,000만 배럴, 가스 1.5조 ft^3
- 운영권자는 Uzbekneftedobycha(100%)이며, 연 평균생산량은 원유 3,000만 배럴, 가스 520억 ft^3 , 컨덴세이트 2,500만 배럴로, 최근 원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

(2) Shurtan 가스 · 컨덴세이트전

- '80년 생산을 개시한 유전으로 남부 Amudarya 분지에 있고 매장량은 컨덴세이트 1억 배럴, 가스 4.6조 ft^3 로서, 운영권자는 Shortan - NefteGaz
- '06년 연간 액화가스(프로판, 부탄) 13만5천 톤과 컨덴세이트 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LPG 생산시설 건설 프로젝트 개시

(3) Central Ustyurt and Southwest Gissar(원유 · 가스전)

- 가채 매장량은 원유 9,000만 배럴, 가스 18.7조 ft^3 로서, 최근 생산물 분배계약(PSA)이 해지되어 재협상 중이며 2007년 생산량은 원유 2,600만 배럴, 가스 710억 ft^3 로 예상

3. 정유산업 현황

- Fergana, Alty-Arik, Bukhara의 3개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능력은 22.2만 b/d
 - Bukhara 정유공장은 구소련 시기에 건설된 이나라 최초의 정유공장으로서 현재 정유능력은 5만 b/d(향후 10만 b/d로 확대 예정)이나 산유량 감소로 가동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공장 가동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04년 82천 b/d)

<그림 II-1>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처리시설 및 정유시설 현황



자료: Uzbekneftegaz.

□ Shurtan Gas Mahsulot JV는 '07년 4/4분기에 Shurtan 유전에서 LPG 플랜트 가동 예정

- 동 플랜트는 프로판(용량 28,240톤), 부탄(용량 24,700톤) 생산 2개 설비와 가압소, 철도 선적 플랫폼, 액화가스 저장시설 건설 등 포함
- 생산한 LPG는 수출하며 컨테이너는 국내 정유공장에서 처리할 계획

□ 2012년 이전까지 싱가포르 기업들과 하류부문 프로젝트 추진 계획

- 민간투자회사인 Temasek Holdings사는 Ustyurt 가스화학플랜트의 화학연료 생산과 Shurtan 가스화학플랜트의 폴리에틸렌 생산용량 확대 추진
- CW Singapore사는 North Ustyurt 지역 Kungrad 가압소의 가스 탈수시설 설치에 참여할 계획

□ 국제 송유관 건설을 추진 중

- 현재 카자흐스탄 Shymkent 정유공장과 투르크메니스탄 Chardzhou 정유공장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외하면 국제 송유관 전무
-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된 원유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의 아라비아해 연안 항구로 수송하기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Central Asia Oil Pipeline(CAOP) 건설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의 정정불안으로 진전은 없는 상태

<그림 II-2> 우즈베키스탄 송유관·가스관 현황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천연가스는 주로 러시아로 수출

- '02. 12월 우즈베키스탄의 Uzbekneftegaz(UNG)는 러시아의 Gazprom과 장기(2003~12년) 천연가스 수출계약을 체결
- '07. 2월 Gazprom은 '07년 중 가스 수입량을 전년보다 44% 늘어난 130억 m³(12억 ft³/d)로 UNG와 합의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우크라이나에도 천연가스 수출

□ Cental Asia-Center(CAC) 가스관의 용량 부족으로 가스수출 제한 상태

- 동 가스관은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나 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된 가스를 러시아로 수송하는 역할에 치중

- '07. 5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4개국 정상은 CAC 가스관의 용량 확대(600억 m^3 →750억~800억 m^3)에 합의함으로써, 용량 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

4. 주요 석유기업

(1) 국영석유기업(Uzbekneftegaz)

- '06년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5% 감소한 10.7만 b/d, 가스생산량은 전년대비 3% 증가한 59.4억 ft^3/d
 - 산유량 감소는 90년대 생산유전 및 탐사활동에 대한 투자부족에 기인
- '06년에 Dehkanabad, Tandyrcha Shimoliy 유전, Yumay 유전, Taylak 가스전 및 Dali 가스전 등 5개 신규 유·가스전 발견

Uzbekneftegaz 개요

- 설립 목적
 - 석유·가스 탐사, 생산, 수송, 판매와 공급을 통한 석유산업 발전
- 설립년도
 - '92년 국영기업 → '03년 국영지주회사로 전환
- 조직
 - 관리자 5,200명, 전문인력 10,300명, 고용인 1,400명 포함 약 8만명

- 구성
 - 석유·가스 사업 관련 4개 자회사
 - 정유공장 3개소, 가스처리 공장 2개소, 가스화학설비 1개소
 - 기타 유전운영회사, 2개의 전문대학 및 1개 언론사 등 보유
- 석유·가스 생산량(06년 기준)
 - 석유: 106,877b/d, 가스: 59.4억 ft³/d

(2) 외국석유기업

가. Gazprom(러시아)

□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투자자로, '02. 12월 Uzbekneftegaz(UNG)사와 가스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체결

- 주요 내용은 2003~12년 장기 가스 구매, PSA 하의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 참여, 가스 인프라 개발 협력 및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중앙아시아 가스 수송 등

□ '04년 Ustyurt의 Shakhpakhty 가스전 재가동을 위한 PSA 체결

□ 2007년 말까지 Ustyurt의 Urga, West Urga, Kuanysh, Aktusum, Aguin, Namabek 및 Akchalakskaya 광구 개발에 대한 25년 계약 체결을 희망

- 탐사 초기 3년간 2억 6,000만 달러, 5년 탐사기간 중 총 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나. Lukoil(러시아)

- 우즈베키스탄의 제 2위 투자기업으로 04년 Hauzak-Shady, Kandym 그룹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Kungrad 지역 탐사를 위한 35년 기간의 PSA 체결(9억 3,000만 달러)
 - 2008년에는 가스 40억~50억 m³, 2010년경에 90억~120억 m³ 생산 계획

다. CNPC(중국)

- Ustyurt의 Alaramorsky와 Karabulsky광구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성과 탐사 및 탐사정에 대한 5,600m 시추 계획

라. KNOC(한국)

- '06년 Fergana 지역의 2개 광구를 분양받았으며, CNPC, Petronas, Lukoil 및 UNG와 공동으로 우즈베크령 아랄해 개발 프로젝트 참여 중

마. KOGAS(한국)

- Surgil 가스전 합자사 설립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참여 중

바. Petronas(말레이시아)

- '07년 말까지 우즈베크와 PSA 체결 예정

Ⅲ. 광물자원 현황

1. 광물자원 매장량

- 석탄(매장량은 중앙아시아 제2위)을 비롯하여 동, 연, 아연, 텅스텐, 레늄 등과 같은 대규모 비철금속 광산과 다양한 산업원료 광물 보유
-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는 에너지·광물 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총 10조 9,6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석유·가스 4조 1,730억 달러(38%), 고령토·흑연·현무암·혈압 3조 8,640억 달러(35%), 귀금속 3,770억 달러(3.4%), 철, 비철금속, 희귀금속 및 방사성 광물 8,090억 달러(7.4%) 등

<표Ⅲ-1>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광 종	단위	매장량(A)	세계 전체(B)	A/B(%)	세계 순위
형 석	백만 톤	27	215	12.6	4
금	톤	5,300	49,800	10.6	3
몰리브덴 ^(*)	천 톤	60	8,600	0.7	11
우 라 늑	천 톤	65.62	2,619.31	2.5	11

주: 형석 매장량은 키르기즈스탄영토 내 매장량 포함.

자료: Minerals Handbook 2000~2001,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6.

2. 광종별 현황

(1) 석탄

- 석탄 매장량은 70억 톤이며, 이 중 상업적 가치가 있는 매장량은 19억톤 (갈탄 18억 5,300만톤, 역청탄 4,700만톤)
- Angren, Shargun, Baisan이 3대 석탄 생산지대로서, 석탄생산량 중 약 70%가 갈탄이고 나머지는 역청탄
- 정부는 2002~10년의 석탄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 940만톤(갈탄 929만톤, 역청탄 11만톤)이 목표로서, 90%가 Angren 탄광의 시설개선에 약 2억 5,4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2) 금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9위의 금 생산국이자 세계 5위의 금 부존국으로서 금의 확정광량은 2,100톤, 총 부존량은 3,350톤으로 추정
- Muruntau는 이나라 최대이자 세계 유수의 금광상으로서 1960년대 소련에 의해 개발되었고, 약 1,500톤의 확정광량을 보유
 - 우즈벡 최대의 금·우라늄 생산업체인 Navoi Mining and Metals Combine(Navoi)이 Muruntau를 개발하여 연 57톤~60톤의 금을 생산
 - Navoi는 Zarafshan과 Uchkuduk에 2개의 금 처리공장을 운영 중이며, 매년 25% 금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까지 금 생산량을 20%로 증가시킬 계획
- Almalyk Mining and Metals Combine은 이나라 제2의 금 생산기

으로서 2003년 9월에 추정매장량이 약 300톤인 타쉬켄트 지역의 Kyzylalma와 Kochbulak 금광상 개발권을 획득

-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미국의 Newmont Mining Corp이 50:50으로 투자한 Zarafashan-Newmont는 Muruntau 금광상에서 1995년 이래 100톤의 금을 생산

(3) 텅스텐

- 텅스텐 부존량은 CIS 국가 중 최대규모이며 Ingitchke, Koytash에서 집중적으로 생산
- 이스라엘의 Metek Metals는 Navoi Metallurgical Combine 및 SGC와 Sautbai의 텅스텐 광상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텅스텐 약 19,900톤을 함유하고 있는 400만 톤의 광석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4) 동, 연, 아연, 은

- Almalyk Mining and Metals Combine가 독점 생산업체로서 Kalmakyr(매장광량 10억톤, 품위 Cu 0.4%), Sary Cheku, Uch-Kulach 광상을 개발하고 있고, Dalneye광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Kyzylalmasai와 Kochubulak 금, 은 광상을 운영
- 생산량을 2006년 연간 9만 3천 톤에서 2010년에는 10만 2천 톤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3억 4,75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에

일본 UFJ은행, Commerzbank, ABN 등이 신디케이트론(3,500만 달러) 공여

(5) 우라늄

- 총 매장량은 약 6만 5천 톤(세계 11위)으로 추정되며 키질쿰 주에 있는 27개 광산에서 생산
- 이 나라 최대 금생산업체이자 유일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업체인 NGMK가 2005년 중앙 키질쿰 지역(Kendyktyube, Lyavakan 및 Tokhumbet 등 3개 광산)에서 노천채광으로 2,310톤의 우라늄을 생산했으며, 2006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1.8% 증가

(6) 철강

-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철강 생산자인 Uzmetcombinat¹¹⁾는 연간 75만 톤의 조강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강철 60만톤, 압연 제품 55만톤을 생산

11) Uzmetcombinat의 지분구성은 정부 51%, 종업원 9.3%, 외국인 22%, 나머지 17.7%는 NBU, Navoi Mining and Metals Combine, Alamalyk Mining and metals Combine 및 Uzdaewoo Auto 등

IV. 석유산업 정책 및 개발 동향

1. 석유산업 정책

- 2002년 12월 '지하자원의 이용에 관한 신법'이 발효되어 광물자원 개발에 외자 참여를 제한해 온 법률이 수정되고 특히 석유와 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
- 2003년 10월에는 생산물분배협정(PSA)이 개정되어 투자비 회수기한이 종래의 1년에서 계약에 규정된 기간으로 연장
 - '01년 영국 에너지기업 Trinity Energy사와 Ustyurt 및 Gissar 지역 가스개발 PSA를 체결한 바 있으나, '05년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
 - 한국, 러시아,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 이들 국가와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
- 석유·가스의 탐사와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탐사작업의 시행과 이미 발견된 유전의 지속적인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허용
 - 계약에서 명시된 지역에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탐사와 발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 석유생산물의 지분 소유권과 일부분에 대한 자유로운 수출 권리
- 석유와 가스의 탐사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장비, 재료, 기술자원 및 서비스의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석유와 가스의 생산개시연도부터 법인세는 7년 동안 면제, 소득세는 현행 세율의 50% 적용
- 합작투자업체에서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에게 재산세와 소득세 면제
- 투자자본금이 탐사작업에 투입되는 기간 중 수취한 일부 통화의 강제매각 의무 면제

□ 생산물분배계약(PSA)

- 채굴될 지하자원 지구(plots)는 천연자원 매장이 확인되지 않은 지구로 제한되며, 매장여부가 확인된 천연자원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나 자원발굴을 위한 재정적인, 기술적인 수단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PSA에 포함
- 지하자원 지구는 경쟁입찰방식으로 PSA 체결대상이 되나, 필드의 입찰에 1인의 외국인 투자자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내각이 절차를 조정할 수 있고 PSA 하의 모든 활동은 내각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PSA 유효기간 동안 발급
- 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경비는 생산물의 형태로 보상
 - 보상은 상업적인 발굴이 시작된 해부터 시작되고 해당년도에 보상되지 않은 경비는 계약기간 내에서 다음해에 보상되나, 세금, 사업

이나 다른 위험의 보험, 투자자의 판매경비, 벌금, 페널티는 동 경비에서 제외

- 외국인 투자자는 소득세, 토지세, 지하자원사용세, 물사용세, 환경오염비, 지급급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기타 세금은 면제
- 거주자 법인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된 제품, 작업 및 서비스는 VAT가 면제되고, PSA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품, 작업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투자자의 생산지분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2. 석유개발 동향

- 현재까지 193개 유전이 발견되어 이중 93개가 개발 중이고 67개가 개발 준비 중이며 33개는 탐사작업이 진행중
- '90년대 이후 유전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산유량이 다소 감소
 - 석유생산량은 '04년 14만 b/d, '05년 12만 b/d, '06년 11.1만 b/d로 감소세
- 산유량 감소에 대한 타개책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 석유회사의 소형 유전개발 참여 장려
 - '05. 6월 중국 CNPC사는 Bukhara와 Khiva 지역의 유전 개발을 위해 우즈베크 국영석유가스회사 Uzbekneftegaz와 합작법인 설립 합의
 - '05. 7월 중국 Sinopec사는 기존 유전의 생산 재개를 위해 Uzbekneftegaz와 1억 600만 달러 투자계약 체결

- 말레이시아 Petronas사는 아랄해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2억 달러를 들여 Uzbekneftegaz사와 합작법인 설립계획 발표

□ 천연가스 생산량은 독립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2년에 1.51조 ft^3 를 기록하였으며 정부는 '07년 2.30조 ft^3 로 증대시킬 계획

- 1960~70년대에 구소련에 의해 개발된 Uchkyr와 Yangikazgan 등 일부 노후화된 가스전에서는 생산량 감소 시작
- 이에 정부는 Garbi, Shurtan 등 기존 가스전의 개발과 함께 신규 유전 개발과 신규 매장량 탐사를 가속화

V. 외국인 투자환경

1. 투자관련 법률

- ☐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1998. 4. 30)
- ☐ 외국인 투자보증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 1998. 4. 30)
-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및 특혜에 관한 대통령령(1996. 11. 30)
-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2005. 4. 11)

2. 외국인투자 조건

(1) 외국인 투자자 요건

- 최소 납입자본금 15만 달러 이상
- 기업의 투자자 중 적어도 하나는 외국 법인이어야 함.
- 외국인 투자 참여지분이 전체 납입자본금의 30% 이상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매출의 60% 이상이 자체 생산제품 혹은 서비스 판매로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투자생산기업으로 간주되어 일정 세금 및 관세 감면 등의 혜택제공 대상

(2) 외국인 투자자 인센티브

□ 법무부에 등록된 기업에 한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되며, 투자 후 10년 동안은 법률이 개정되어도 최초 투자조건을 인정

- 투자형태는 지분참여, 법인 설립, 채권, 주식, 주식증서, 다른 증권의 취득 혹은 토지, 부동산 권리, 지하자원 개발 양도권 취득 등

□ 외국인 투자기업이 라디오·전자 산업 및 부품 제조, 경공업, 면방, 건설재료, 가금류, 음식, 화학 및 의약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세, 환경세, 중소기업 통합세, 도로기금 면제

- 단, 투자지역은 노동력이 풍부한 Karakalpakistan, Djizak, Qashkadarya, Syrdarya, Surhandadya, Khorazm, Navoi, Andijan, Namangan and Fergana주(州)이어야 하며, 합작투자 기업은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외자기업 투자금액이 30만~300만 달러인 경우 3년, 300만~1천만 달러인 경우 5년,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7년동안 세금을 면제

- 정부는 이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보증 (Sovereign Guarantee)을 제공하지 않음.

- 투자는 경화나 신규(현대적) 기술장비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세금 감면분은 기업의 발전에 재투자되어야 함.

□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수출기업은 총판매액 중 수출비율이 15~30%인 경우에 소득세와 재

산세를 30%까지,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50%까지 감면되며,

- 단, 도소매나 중개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면, 섬유, 석유, 가스, 귀금속 등 특별품목의 수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생산자는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기술 자원에 대한 수입 VAT의 지급을 90일까지 연기 가능

3. 조세 제도

(1) 조세정책

□ 1998. 1월 '조세법'(Tax Code of Uzbekistan) 도입이 세제 현대화의 전기

- 그러나 여전히 높은 과세부담, 비효율적인 세금감면에 따른 경제 부문별 불균형이 상존하였고 잦은 세제 개편, 비효율적인 세정 운영, 투명성 부족 및 세법의 불명확한 조항 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2005~07년 세제개혁으로 조세부담 완화, 세제 단순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관련 조항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세법을 마련 중

(2) 주요 세제(2007. 1월에 개정된 '조세법'의 제6조)

<표 V -1>

세금 구분

국세(Republican Taxes)	지방세(Municipal Taxes and Collections)
-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자원개발세(subsurface use tax) - 물품세(excise tax) - 심토세(subsoil use tax) - 수자원사용세(water use tax) - 도로세(road tax) - 학교세(school tax)	- 재산세(property tax) - 토지세(land tax) - 인허가 관련 제세(miscellaneous taxes for commercial licenses)

□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우즈베키스탄에 설립 또는 등록된 법인은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
- 국내에 영구조직(permanent establishments)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비거주자 법인(non-resident legal entities)의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한 국내소득에 대하여 과세. 과세대상 금액은 국내소득에서 세법 및 재무부 고시 제54호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2007년 세제개혁으로 일반 법인소득세율은 종전의 12%에서 10%로 인하되었고, 영구조직을 통한 비거주자 법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10% 세율 적용
 - 단, 경매 및 유흥업 종사기업은 35%, 상업은행은 17% 적용

- 세제 특혜

- 매출액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매출액의 15~30%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30% 감면
- 컴퓨터 장비, 소프트웨어 및 교육훈련 관련 제조, 유통 및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5% 적용

- 국내에서 비거주자 법인이 영구조직의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¹²⁾, 공제없이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적용. 또한, 해외에 송금하는 과실에 대해 10%의 세율 적용

-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43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세율은 국제협약에 따라 인하 가능

□ 통합소득세(unified tax)

- 2005년 7월 1일 대통령령 발효에 따라 중소기업(small enterprises

<표 V-2>

원천징수세율

소득 원	세 율
이자 및 배당금 수익	10%
보험료	10%
통신 및 화물 수입	6%
로열티, 임대료, 경영관리 수익, 컨설팅 비용 및 세금 미납부 기타 수익	20%

12)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국가에서 수행한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한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

and micro-firms)¹³⁾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통합소득세(unified tax payment)’ 적용대상

- 소득세, 연기금, 도로기금, 학교기금, 국가로부터의 토지임차 등과 관련한 납부 방식을 통합하여 단일 지급방식으로 전환
- 세율은 종전에 13%였으나, 2007년 4월 7일 재무부와 국가세무위원회(State Tax Committee)가 10%로 인하 결정

– 통합소득세 적용 대상 법인

- 중소기업(알콜 생산업자, 통합 토지세 및 고정 세액 납세자, PSA 참여자 제외)
- 민간 공증사무소
- 복권 및 게임관련 법인
- 콘서트 등 이벤트 기획사
- 농산물 생산업체(통합토지세율 적용 기업 제외)

<표 V -3> 기업종류별 통합소득세율

구 분	세 율
일반(중소기업)	10%
민간 공증사무소	50%
콘서트 등 이벤트 기획사	30%
농산물 생산업체 (통합토지세율 적용 기업 제외)	6%

13) 지점근무 종업원 20명 이하, 서비스 및 비생산 사무소 10명 이하, 도소매 및 공공 케이터링 5명 이하, 음식가공산업, 금속, 목재, 가구 등 건설자재산업은 100명 이하, 연료 및 에너지, 화학산업, 제조 및 농업 생산, 건설 등 제조업 50명 이하, 과학 교통, 통신, 서비스분야(보험회사 제외), 무역 및 공공 케이터링 및 다른 비생산부문 25명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small enterprises and micro-firms)으로 분류됨.

- 단, 2007년 1월 1일부터 도소매 기업¹⁴⁾ 및 공공 케이터링(catering) 기업은 의무적으로 통합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각각 총수익의 1~5%(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 10%임.
- 통합소득세 적용법인의 구분 회계관리 및 세액신고
 -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소득원별로 회계를 구분·관리 의무
 - 중소기업은 매분기 종료 후 익월 25일까지 분기별로, 기타 사업자는 매 익월 25일까지 월별로 세액신고 의무

□ 과세대상

- 과세 표준은 총매출소득에서 아래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
 - 부가가치세 공제액, 소비세, 재산세, 토지세, 심토사용세, 수자원 사용세, 관세 등
 - 단기 은행대출 및 여타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별과금 제외)
 - 종업원 급여 및 특정 수수료(은행, 보험회사, 비디오/오디오, 경매, 카지노, 비국영 복권, 콘서트 등에 대한 지출 제외)
- 주요 공제 제외대상
 - 법정한도를 초과한 광고비, 출장비 및 유흥비
 - 비은행 대출이자, 장기대출이자 및 기타 모든 연체이자

14) 매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행위(core activity)가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에 한정되며,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전문 매장, 브로커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체포되지 않은 범법자의 자금 회령에 따른 손실과 지출 등
- 기타 과세대상소득 차감 항목 및 한도
 - 환경 및 자선기금 기부액: 과세대상수입의 1% 이내
 - 제조설비 개발, 확장 및 재건설 관련 비용: 과세대상수입의 30% 이내
- 감가상각
 - 3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된 고정자산 매각 손실은 총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하나,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손실은 공제 불가
 - 법인의 연말 손실액은 향후 5년간의 총소득에서 연간 과세대상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소득세 감면 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감가상각률 최대 허용한도

<표 V -4> 고정자산 감가상각률

고정자산	감가상각률
승용차, 도로 통행용 트랙터, 특수 공구, 컴퓨터 및 컴퓨터 장비 등	20%
트럭, 버스, 특장차, 트레일러, 기계류, 산업 장비, 단조 및 압축 기계, 건설 및 농업용 기계, 장비 및 사무용 가구	15%
철도, 해상, 및 수상 운송장비, 전력 및 난방 장비, 전기 장비 및 터빈, 송전 및 통신 장비, 파이프라인	8%
빌딩, 건축물 및 구조물	5%
기타 감가상각 대상 자산	10%

- 세무 신고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15일까지 세무당국에 재무제표 제출 및 납세 신고
- 비거주자 법인의 대표사무소와 외국법인(Foreign Legal entities)은 익년 3월 25일까지 세무당국에 세금환급 신고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과세목적상 ‘우즈베키스탄 거주자’는 ‘1년 체류기간 중 183일 이상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개인’이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부과

- 소득세율

-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최고 25%

<표 V -5>

개인소득세율

과세대상 소득(최저 임금 차감액)	종 전	현 행
연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미만	13%	13%
연간 법정 최저임금의 5배(+1숨) ~ 10배 미만	21%	18%
연간 법정 최저임금의 10배(+1숨) 이상	30%	25%

- 월 법정 최저임금은 2007. 1. 1 현재 12,420숨

- 비용차감 항목

- 대부분의 사회보장혜택
- 국가연금

- 직무상 손해에 대한 보상금
-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출장비
- 기업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의 자산매각 차액
- 손해배상금
-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상속
- 우즈베키스탄 은행 지급이자
- 지적재산에 대한 수익 등

□ 사회 보장세(social tax)

- 2006. 1. 1 고용주들은 25%의 통합 사회보장세를 납부

<표 V -6>

사회보장세율

	세 율	비 고
연금 기금	종업원 총월급의 24.2%	해당 기업 매출액의 0.7% 포함
고용 기금	0.5%	
노동조합연합회	0.3%	대표사무소 제외
계	25.0%	

- 종업원이 부담하는 연금 기금 납부액은 급여의 2.5%
- 우즈베키스탄에 고용된 외국인은 연금 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본국의 의무적인 사회보장지급은 과세 공제대상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기준으로 20%의 세율 적용

- 세법 제71조에 VAT 면제대상 상품 및 사업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 세법 개정안에서 다음 사항이 추가
 - 의료 서비스(미용 목적 제외), 약품 및 의료용품 판매(생산자의 판매액 포함), 자가생산한 농산물 판매

□ 물품세(excise tax)

- 물품세 부과대상과 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하며, 상대국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 수출용 상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음.
- 품목별 적용세율을 보면, 수출을 목적으로 판매된 상품은 물품세가 면제되는데, 단, 내각에서 정한 품목은 제외함. 1999년 12월 31일에 정한 상품과 세율은 담배 50%, 술 50%, 종이 50%, 가정 전자기기 50% 등이며 이러한 상품이 경화로 수출되면 수출물품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수입시 부과하는 품목 및 세율은 과일/야채 주스(파인애플과 감귤 제외) 70%, 광천수 100%, 담배 50%(단, 1,000개피당 7 달러이상), 에어컨 20%, 애완동물 음식 70%, 석유 및 석유생산물 20%, 자동차(엔진배기량 1cc당 2.4~3.1달러) 및 자동차 부품 20%, 가구 50%

□ 심토세(subsoil use tax)

- 세율은 내각에 의해 결정되며, 심토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

□ 자원개발세(subsurface use tax)

- 자원개발등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과세대상

<표 V -7>

자원개발 세율

사업내용	과세기준	세율
천연자원과 부산물의 채굴	채굴량	- 천연가스: 30% - 보석: 24% - 원유: 20% - 금: 5% - 은: 8%
천연자원의 채굴시 받은 부산물의 사용	채굴량	- 추출된 주요 천연자원에 적합한 세율의 30%

□ 수자원사용세(water use tax)

- 사업 활동에 수자원을 이용하는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하며, 2007년초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2006년에 비하여 50% 인상
- 기업들(수력발전소, 공익사업체, 농업기업 및 개인기업 제외)이 부담하는 비율은 지표수의 경우 14.4습/m³, 지하수의 경우 18.5습/m³ 부담

□ 교육세(school tax)

- 2004. 12. 28자 내각 결의에 따라, 모든 법인은 매년 매출액의 1%(VAT 및 소비세액에 따라 차감)를 '학교교육 개발기금'¹⁵⁾에 납부

□ 도로세(road tax)

- 모든 법인은 매년 매출액의 1.5%(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를 도로 및

15) Nonbudgetary Fund for School Education Development

고속도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로 기금(Road Fund)'에 납부

□ 재산세(property tax)

-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데 세율은 법인이 3.5%이고 개인은 재산이 1998. 1. 1자로 재평가되었으면 재산가치의 0.5%, 재평가되지 않았으면 재산가치의 7%
- 신규 기업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 3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재산세 50% 감면
 - 매출액의 15~30%를 수출하는 기업은 재산세 30% 감면
 - 외국 법인의 대표 사무소 및 대규모 합작법인은 재산세 면제

□ 토지세(land tax)

- 2007년 세법개정으로 세율이 2006년에 비하여 50% 인상되었으며, 타슈켄트의 경우 기업 소재지에 따라 토지 1 ha당 3,793,529~41,423,705숨

<표 V-8> 지방정부가 적용하는 세율

종 류	세 율
가솔린 및 디젤 사용세	50숨 /리터
가스 사용세	50숨 / kg
사회간접자본 개발세	기업 순이익의 8%
주정 및 담배 판매업 면허세	최저임금(월 10달러 상당)의 5개월분/월
무역업 면허세	최저임금의 3.5개월분/월
사업자 등록세	최저임금의 4개월분(개인), 5개월분(법인)

□ 기타 지방세 및 납부금

-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주 정부, 타슈켄트시 등 지방정부에서 적용

(3) 조세 인센티브

□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우대정책 실시

- 내각의 특별결의에 따르면, 해외투자기업은 사업의 중요성, 투자금액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감면 가능
 - 투자규모 2,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사업은 내각의 동의 필요
 - 법무부에 등록된 해외투자기업만이 세금감면 대상
- 2005. 4. 11자 대통령령에 따르면, 섬유, 건축자재, 낙농제품 등의 생산과 관련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는 사업은 세금 혜택에 따른 수익을 재투자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득세, 재산세 및 기타 세금 면제
- 정부는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현대화 및 기술혁신 촉진 추가방안' 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발표(2007. 3. 14)
 - 생산시설 현대화, 기술혁신 등과 관련한 비용과 동 사업에 대한 은행 및 리스 차입금 변제액에서 연간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3년 범위 내에서 소득세 과세표준을 차감 적용
 - 생산에 투입된 신기술 장비에 대해 5년간 재산세 면제

- 소비재 및 아동용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2002. 11. 13자 내각 결의에 따라 세금 혜택을 부여
- 간이과세방식인 ‘통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생산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25% 범위 내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가격만큼 과세표준을 차감

4. 노동제도

(1) 노동계약

- 우즈베키스탄 국민 또는 외국인의 고용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관계는 단체협약 및 개별 고용계약서에 따름.
 - 고용계약은 법규에 따라 서면을 통해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계약기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
- 고용계약의 해지는 계약 만료 후 1주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
 - 근로자는 음주, 절도, 비도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되며,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될 경우에는 능력부족에 대한 기록과 최소 3번의 견책 필요

(2) 근로기록부(Work Books)

-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고용주에게 개인의 인적사항과 과거, 현재의

근로기록이 포함된 근로기록부를 제출할 의무

- 근로기록부 작성은 근로자의 일시적인 질병 혹은 장애에 대해 국가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산정함과 함께 국가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이 근로기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고용개시 5일 이내에 신규 기록부를 제공할 의무

(3)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

- ☐ 고용계약서에는 근로자를 이유나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는 3개월의 수습기간 포함

(4) 근무 시간

- ☐ 주당 정규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허용되며(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근무도 있음), 초과근무는 2일 이내에 4시간, 연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정규급여의 최소 200%로 보상

(5) 휴일

- ☐ 최소 연간 휴일은 15일이며, 미숙련 근로자와 장애 근로자는 30일까지의 추가 휴일 가능

(6) 병가

-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시적 질병이나 장애로 휴가 중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사회보험기금이 종업원 급여의 75~100%를 지급

(7) 출산휴가

- 출산전 70일, 출산후 56일 이상(70일까지도 가능)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출산휴가 기간에는 종업원의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나, 고용주는 국가사회보험기금에 납부한 기부금에서 공제를 통해 보상받음.

(8)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노동 이민발급기관(Agency on Foreign Labor Migration Issues)에서 외국인 노동허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허가(Work Permit)를 취득
- 기관은 모든 필요한 서류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노동 허가를 발급
-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와 유사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외국인 노동허가 수수료는 월 최저 임금의 10배이며, 근로자의 취업 허가 수수료는 무료

-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노동허가와 취업허가 모두 필요치 않으나, 대외경제투자무역부에서 개인별 인증카드를 발급

5. 외환제도

- 우즈베키스탄이 2003. 10. 15 IMF 제8조국으로 가입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경화(귀금속, 보석, 수표 등)의 매매, 이자 송금,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통화 전환 등 제한 폐지
 - 우즈벡 법인은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우즈벡이 아닌 국가에 은행 계좌를 보유할 수 없고, 국내의 모든 결제는 비거주자가 서비스 지급을 경화로 하거나 정부와 우즈벡 통화법에 의해 제한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현지통화를 사용
- 환율은 세금, 관세 등 공식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공식환율과 대외거래를 위한 경화의 50% 강제매각에 사용되는 OTC환율이 존재
- 결제는 사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은행 송금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업인 소액 현금을 보유할 권리도 엄격히 제한되며, 현금이나 복리비의 지급, 출장경비 등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인출 가능
 - 대부분의 기업은 제품, 서비스의 수출과 관련된 상업적인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외화소득의 50%를 수령한 지 5일 이내에 OTC 환율로 숨화로 환전할 의무
- 경화의 환전의무는 합작기업을 포함하여 우즈벡의 모든 기업과 외국

기업의 지점에 해당되며, 수출로 인해 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은 의무적 환전대상으로 간주

- 납입자본금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인 기업과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법인설립 시점부터 5년 동안 경화의 의무적인 환전 면제

Ⅵ. 우리기업의 투자현황 및 진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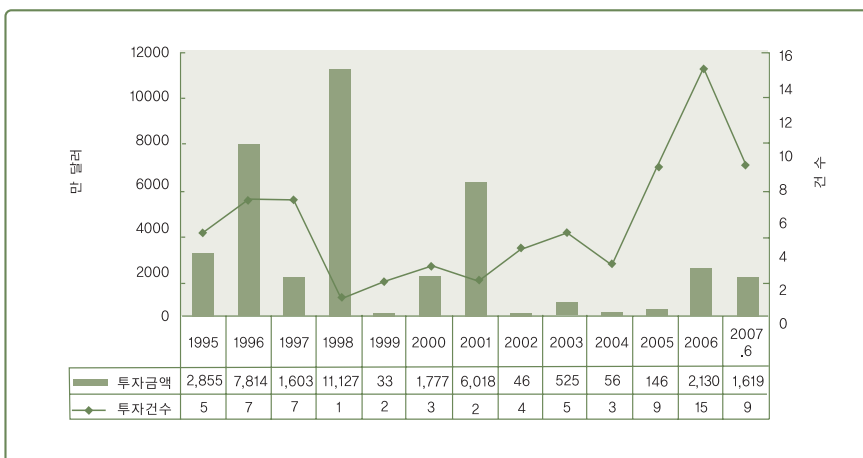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투자현황

(1) 대 우즈베키스탄 해외직접투자현황

□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1992년 수교 이래 199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정체된 이후 2007년 6월말 현재 누적 투자기준으로 투자건수 74건, 투자금액 4억 3,879만 달러

- 투자초기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대우자동차 및 갑을방적이 매각, 청산됨에 따라 투자가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양국간의 정상방문을 계기로 2005년 이후 투자건수와 금액이 증가

<그림 VI-1>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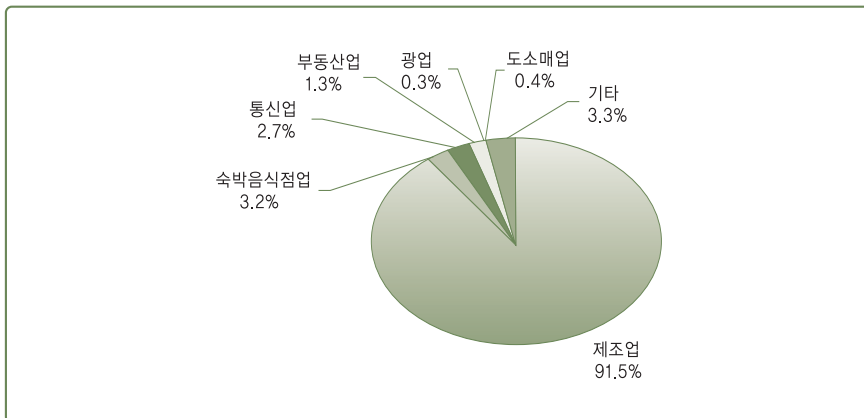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투자현황('07년 6월까지 누적기준)은 제조업이 4억 131만 달러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업 1,411만 달러, 통신업 1,200만 달러, 부동산업 560만 달러 등의 순

- 대표적인 투자로는 우즈벡 정부로 매각된 우즈대우 자동차 공장, 우즈세명, 우즈동원 등 자동차부품업체, 섬유업체에 다수 투자되었고 대우자동차, 갑을방적이 정리됨에 따라 현재는 대우인터내셔널이 100% 투자한 대우텍스타일이 최대 투자기업

<그림 VI-2>

업종별 투자비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자원개발 투자현황

□ 자원개발과 관련한 직접투자는 미미한 상태이고 최근 들어 한국석유공사의 아랄해 유가스전 사업, 한국가스공사의 수르길 가스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자파드노 금광, 잔투아르 우라늄광 등 총 7건 진행 중

<표 VI-1>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

구분	협력 사업명	진행 현황
원유 (석유공사)	아랄해 유 · 가스전 (추정매장량 LNG 환산 2억 톤, 예상 탐사비용 1억 달러, 한국 지분 20%)	· 국제 컨소시엄 참여의향서('05.5) 및 합의서 체결('05.9) · PSA 체결('06.8), · Posco앞 지분(49%) 양도('07.6) · 물리탐사 착수('07.10)
	Namangan-Terachi 광구	· 공동탐사약정('06.3) · 조건협상 및 계약추진('08년 상반기)
	Chust-Pap 광구	· 공동탐사약정('06.3) · 조건협상 및 계약추진 예정('08년 상반기)
가스 (가스공사)	Surgil 가스전 개발 (추정매장량 7천만 톤, 예상투자 비용 18억 달러)	· 공동탐사약정('06.3) · Pre F/S 내각 승인('07.9) · 한국 컨소시엄 합의서 서명('07.10) 및 합작법인 설립 작업중
	Uzunkui-Tuarkyr 광구 (추정매장량 1억 7,900만 톤)	· 공동탐사약정('06.3)
광물 (광진공)	자파드노 금광 (추정매장량 60톤, 예상투자비 840 만불, 우리측 지분 50%)	· 자원협력 양해각서 체결('05.5) · 합작법인('06.5) 설립 · 탐사작업중('2009년 종료) · 현재까지 20~30톤 탐사(예상보다 적음)
	잔타우르 우라늄광 (추정매장량 2만 6천톤)	· 양해각서 체결('05.5) · Pre F/S 종료('07.4) · 가채 매장량 예상보다 적어, 경제성 맞추기 위해 주변광구 요청 검토중

□ 주요 자원개발사업

○ 아랄해(Aral Sea) 가스전

- 한국석유공사가 5개국 국영회사 컨소시엄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PSA)을 체결('06. 8. 30)하고 아랄해 가스전 생산물에 대해 20%의 지분을 확보(9.8%는 POSCO앞 양도)

아랄해 가스전 프로젝트 및 생산물 분배계약의 주요내용

- 매장량(추정): 천연가스 약 8조 ft^3 (지분 감안 1.6조 ft^3 , 약 3,600만 LNG톤)
- 지분현황: 5개국 국영석유회사 균등 분할(각 20%)
 - KNOC(한), Lukoil(러), Petronas(말), CNPC(중), Uzbekneftegaz(우)
- 계약주체: 우즈베크 정부 및 컨소시엄 5개사
- 계약기간: 35년 (탐사 5년, 개발·생산 30년)
- 의무 투자비: 9,980만 달러(한국측 부담 2,000만 달러)
- 운영권자: 5개 참여사 공동운영(SPC 설립)
- 수익분배: 로얄티 및 투자비용 회수 후 우즈베크 정부와 SPC가 50:50으로 분배

○ 수르길(Surgul) 가스전

- 한국가스공사는 우즈베크 석유가스공사(Uzbekneftegaz)와 수르길 가스전의 개발 및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타당성 조사에 합의('07. 11)

- 사업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¹⁶⁾(50%), 우즈벡 가스공사(Uzbekneftegaz, 50%)
- 사업 내용: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설비 건설·운영
- 예상매장량: 7,000만톤 (가채년수 38년)
- 생 산 개 시 : 2011년
- 총사업비용(18억 달러): 가스전 개발(3.5억 달러), 가스화학설비(14.5억 달러)
- 생산물 판매: 우즈벡 정부(천연가스) 및 수출(화학제품)

○ Djantaur(잔타우르) 우라늄광산

- 우리나라 우라늄 도입량의 6.5년치의 매장량을 보유한 잔타우르 광산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2010년까지 5년간 총 1,500톤 규모를 수입키로 합의
- 광업진흥공사의 예비 F/S 검토 결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추가적인 탐사 및 성광회수 시험 등을 위해 우즈벡 지질위원회와 동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

○ 자파드노 금광

- 매장량 60톤 규모로 광진공, 대우인터내셔널, SK 네트워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우즈벡 지질위원회와 공동으로 탐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하면 연간 2.5~5톤의 순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16) 컨소시엄에 롯데유휘화, LG상사, SK에너지, STX가 참여할 예정

2. 진출시 강점 및 약점

(1) 강점

-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5,500만), CIS(2,800만), 자유무역지대(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길목에 위치
-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2,600만 명)를 보유하고 있고 임금수준이 저렴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약 20만 명의 한인동포 활용 가능

(2) 약점

-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직적 통치체제로서 고위급 인사 또는 인맥을 통한 교류없이 투자 진출하기는 리스크가 매우 큰 것이 현실
- 환전, 과실송금 등 국내에 유입된 자금과 자본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외환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실송금을 엄격하게 규제
- 법적 안정성 미흡, 현지 인적 네트워크 미비, 고급인력의 인근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유출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

3. 우리의 진출방안

(1) 내수가 아닌 수출업종인 경우 진출 검토

- 내수업종은 외환 환전 및 송금 규제로 정상적인 무역활동이 어려우므로 100% 수출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투자 검토
- 농산물, 면화, 금 등의 주산지이므로 농산물 식품가공, 면방, 금 세공 등 원재료를 이용한 수출상품을 개발하여 100% 수출을 하는 경우 투자를 검토할 필요

(2) 발전 및 석유화학 등 플랜트 산업에 관심

- 구소련 시절 설립한 각종 공장과 설비가 상당수 노후화되어 이들에 대한 개보수 및 신설 수요가 적지 않으므로 부가가치는 낮지만 향후 신규 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보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 필요
-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석유, 발전소, 전력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분 참여를 통한 플랜트 산업 진출의 교두보 마련

(3) 정부 주도의 석유·가스 개발사업 참여

- 우즈베키스탄은 반미 성향이 강하고 자원개발 투자의 러시아, 중국 편중현상을 축소하기 위해 한국의 투자를 선호하는 입장

- 중앙아시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석유, 가스 자원이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구 열강에 비해 시장 선점효과 기대 가능
- 내륙 깊숙이 위치한 지리적 한계, 수송 인프라 미비 등에 따른 초기 투자 및 물류비용 과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일반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우므로, 정부나 석유공사, 가스공사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4) 先 유무상 원조, 後 정부간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선별

- 국가차원에서 수은의 EDCF(유상)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지원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정부가 우즈벡 정부와 정부간 협력을 통해 지원가능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우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와 아울러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T), 플랜트 등 건설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플랜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참여
- 시장 원리보다 세부 계약 등을 통한 정부의 지원여부가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고 대정부 협상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전략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

4. 진출시 유의사항

(1) 구소련 시절의 정부 Redtape 및 정부 규제 만연

- 사회 곳곳에 구소련 시절의 관료주의 관행이 남아있고,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직·간접적 간섭과 규제로 인해 사업진행 및 의사결정 과정이 비효율적
- 정부 산하기관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으며, 산하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최종의결권은 사실상 기관장이 아닌 내각(대외경제무역부 장관 등)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국가만이 지하자원을 탐사, 시추, 개발 가능

- 국가가 지하자원을 탐사, 시추, 개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자원개발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영지주회사(우즈베크 지질위원회, Uzbekneftegaz 등)에서 정부의 위임을 받아 탐사·데이터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

(3) 관련 법률보다 대통령령을 우선시하는 경향

- 기존의 투자법보다 계약 체결시마다 공포되는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인투자법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

내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대통령령 공포 후 발효되기까지 유예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현지 변호사 고용이 바람직

- 현지 외국인기업은 급변하는 법규 및 투자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며 우즈베키스탄 법원은 국영기업이나 정부 유관기관이 개입된 사업인 경우 국내기업에 보다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
- 따라서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지 파트너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 유지가 필수적

(5) 강제 수용 또는 과도한 세금 부과

- 우즈베키스탄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규를 위반하거나, 계약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자산·토지·개발사업이 재평가된 경우 등에 한해 정부의 법적인 사유자산 강제 수용을 허용
- 자산을 강제수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에 머금가는 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배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최근 정부의 자원통제전략이 강화되면서 자원개발 분야의 수익성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해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수용 위험 부담 증가
- 실제로 2006년에 정부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경문제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대형 합작법인이 추진하는 수익성 높은 사업의 선취권을 행사

사례 1: 영국 금광회사 Oxus

- 우즈베키스탄 법원은 금광개발업체인 영국의 Oxus社에 대해 2억 2,400만 달러의 체납 세금 및 법규 위반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판결
- Oxus社는 2003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50대 50의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중부 키질쿰 사막의 Amantaytau 금광을 개발하여 왔으며 지난 2005년 중 161,615온스의 금을 생산
- 지난 8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Oxus社의 수르한다리아 지역 한디자 광구의 개발 독점권을 취소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이를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에 인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년 5월 발생한 안디잔 사태의 해결을 둘러싸고 서방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오면서 서방 기업에 대한 박해·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계 금광개발 합작투자 법인인 Zarafshan-Newmont에 대하여 4,80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8월 파산절차 개시
-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제2의 금 생산국으로서 서방 금광개발업체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제 금 가격의 강세에 따른 금광 국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

사례 2: 중국 Sinopec, 우즈베키스탄 철수(2007. 4)

- 중국 국영석유회사 Sinopec의 자회사인 Shengli Oilfield Dongsheng社는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동사는 철수 이유로 높은 석유 생산세(oil production tax)와 수익성 부족을 지적하고, 지분원유에 대한 정부의 처분권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7년 1월,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해 부과되는 생산세는 35%에서 20%로, 가스 응축물 생산세는 32%에서 20%로, 천연가스 생산세는 종전 58%에서 30%로 인하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회사인 Uzbekneftegaz은 Sinopec과 2005년에 MOU를 체결하였으나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주장. 당초 Sinopec은 남서부 Fergana 및 Andizhan 지역의 석유가스 생산재개발 프로젝트에 5년에 걸쳐 1억 600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

(6) 현지 관련업체 및 관계 인사와의 협력관계 구축 강화

-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사회주의 체제 하의 비밀주의 및 관료주의가 남아 있어 국제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일부공사를 제외하면 정보 수집이 어려운 실정
- 따라서 현지 유력인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친분관계 유지 및 우호적인 이미지 구축으로 진출 기회를 모색함이 바람직

아제르바이잔



차 례

I. 정치·경제 현황

1. 일반 개황	141
2. 경제 동향	142
3. 정치·사회 동향	145

II. 에너지자원 현황

1. 매장량 및 수급 현황	147
2. 주요 광구 현황	152
3. 정유산업, 파이프라인 현황	155
4. 주요 석유기업	158

III. 광물자원 현황 160

IV. 석유산업 정책 161

V. 외국인 투자환경

1. 관련 법률	164
----------------	-----

차 례

2. 외환제도	165
3. 조세제도	167
4. 석유관련 조세체제	169
5. 관세제도	170
6. 노동제도	171
7. 회계 및 공시제도	173

Ⅵ. 우리기업의 투자현황 및 진출방안

1. 우리나라의 투자현황	175
2. 우리나라의 진출방안	177
3. 진출시 유의사항	179

표·그림 차례

<표 I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142
<표 I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144
<표 II -1> 아제르바이잔 원유·가스 수급 현황	147
<표 II -2> 아제르바이잔 석유의 생산, 수출, 수익 현황	148
<표 II -3> 아제르바이잔 PSA 계약 체결현황	149
<표 II -4> ACG 유전의 생산 전망	153
<표 II -5>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추이	159
<표 V -1> 일반조세	167
<그림 II -1> ShahDeniz-Sangachal 파이프라인	154
<그림 II -2> BTC 송유관 및 SCP 가스관	156
<그림 II -3> SCP 가스관	157

I. 정치·경제 현황

1. 일반개황

면적	87천 km ²	G D P	199억 달러(2006)
인구	8.5백만 명(2006년)	1 인 당 GDP	2,335달러(2006)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arat
대외정책	대서방관계강화	환율(달러당)	0.89(2006년 평균)

- 원유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제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인접한 카스피해 연안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전략적 중요성 부각
- 최근 연 10%대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특히 2005년 26%, 2006년 35%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향후에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증가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에너지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만연, 비민주적 정치체제,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사회불안의 소지가 있으며, 미해결 상태에 있는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니-카라바흐 분쟁 등의 불안요인 상존

2. 경제 동향

(1) 국내 경제

<표 I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 제 성 장 률	11.2	10.2	26.4	34.0	30.0
재 정 수 지 / G D P	-1.2	0.8	-2.3	-4.8	-5.3
소비자물가상승률	2.2	6.8	9.6	8.3	16.0

자료: IFS, EU.

- 최근 수년간 고유가와 석유생산 증가 및 석유·가스 부문의 FDI 증가세에 힘입어 2002년 이후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거유입과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상승세 가속
- 에너지부문의 재정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총선으로 인한 공무원 임금 인상, 교육 및 보건부문, 사회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에 재정수지는 적자 지속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석유·가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

- 석유·가스 산업 및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부문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독립 이후 내전으로 인해 붕괴된 비석유 제조업 및 농업은 투자부진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등 산업구조가 양극화

- 2006년 기준으로 에너지부문이 수출의 90%, GDP의 50%, 재정수입의 55%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

□ 유럽에 대한 에너지 대체공급처로 부상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시장에 대해 러시아를 대신할 에너지 대체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어, 국제유가 수준에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쳐 원유·가스 수출, 에너지 통과수입 등 외화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통화가치 상승 등의 어려움 직면

- 고도 성장기를 맞아 경제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가스부문의 외국인 투자자금 등 과도한 해외유동성 유입,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물가불안, 통화가치 상승 등의 어려움에 직면

□ 각종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소폭 흑자로 반전 전망

- 에너지부문의 재정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빈곤축소를 위한 각종 복지지출과 인프라 확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07~08년에 소폭 적자로 반전될 전망

(3) 대외거래

- 석유생산이 본격화되면서 2005년부터 상품수지는 흑자로 반전되었으며 흑자 폭도 급격히 확대
- 석유·가스부문 개발과 관련된 건설, 통신, 컨설팅비용 증가로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고,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과실송금으로 소득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2005년 이후 대폭적인 흑자기조

- 2005년 이후 서방 석유메이저들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됨에 따라 FDI 규모가 연간 10억~20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나, 고유가와 석유 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2005년말 12억 달러에서 2006년 말에 25억 달러로 증가
- 정부의 신중한 외채정책 등에 힘입어 2006년 말 외채규모는 GDP의 12.6%인 25억 달러이며 D.S.R도 낮은 수준으로 외채상환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전망

<표 I -2>

주요 대외거래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 상 수 지	-2,021	-2,589	167	3,708	7,500
경 상 수 지 / G D P	-27.8	-29.8	1.3	18.7	24.2
상 품 수 지	-98	161	3,299	7,746	13,100
수 출	2,625	3,743	7,649	13,015	19,500
수 입	2,723	3,582	4,350	5,269	6,400
외 환 보 유 액	803	1,075	1,178	2,500	..
총 외 채 잔 액	1,746	1,986	2,200	2,500	2,000
총 외 채 잔 액 / GDP	24.0	22.9	17.5	12.6	..
D. S. R.	7.0	5.5	3.8	2.4	..

자료: IFS, EU.

3.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동향

□ 정치적 안정 유지 속에 불안요인 잠복

- 헤이다르 알리에프(Heydar Aliyev) 전 대통령(1993년 집권)의 아들로 2003년 10월 대통령에 당선된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 대통령은 2005년 11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어 자신의 통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2008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국민불만 소지는 있으나 사회불만 확산 가능성 낮음.

- 비민주적 정치체제 유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만연 등 최근의 고속 경제성장의 과실을 주로 권력층과 연결된 일부 부유층과 관리들이 향유
- 전체 인구 850만 명 중 25% 이상이 월수입 43달러 이하의 빈곤층이며 서민들의 필수품인 빵과 대중교통 요금 등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여 사회불만의 소지 상존

□ 서방과의 경제 관계 강화, 러시아와는 불안정한 우호관계 유지

- 러시아와 미국,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 세력간 균형을 유지하는 대외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서방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

- 다만, 동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의 비판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동국의 입장이 맞물려 EU로의 정치적 접근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
- 아르메니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와는 간헐적으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BTC 송유관의 개통 이후 러시아의 가스요금 인상에 대응하여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 중단, 러시아 송유관을 통한 석유수출 중단 등의 강경조치 실시
- 아르메니아와는 나고르니 카라바흐(Nagorny Karabakh)지역에 대한 영토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은 실정

□ 이란과는 긴장관계 유지

- 가장 민감한 문제는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둘러싼 이란과는 긴장관계로서, 아제르인들이 이란 내에서 최대 소수민족이므로 이란의 정치적 불안이 동국에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 되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크게 우려

II. 에너지자원 현황

1. 매장량 및 수급 현황

□ BP(British Petroleum)는 2006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을 원유 70억 배럴 (세계 제20위)¹⁷⁾, 천연가스는 48.4조 ft³(세계 제24위)로 평가

<표 II-1> 아제르바이잔 원유 · 가스 수급 현황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원유	매장량 (억배럴)	70	70	70	70	70	70
	생산량 (천b/d)	300	311	313	315	452	654
	소비량 (천b/d)	81	74	86	92	107	96
천연 가스	매장량 (조 ft ³)	1.35	1.35	1.35	1.35	1.35	1.35
	생산량 (10억 m ³)	5.2	4.8	4.8	5.3	5.3	6.3
	소비량 (10억 m ³)	7.8	7.8	8.0	8.6	8.9	9.6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7.

□ 원유는 생산량에 비해 국내 소비량이 적어 수출여력이 매우 크며, '04년 부터 ACG 해상유전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BTC 송유관을 통한 석유 수출 본격화

- 석유수출수입은 2006년에 7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179억 달러에 달할 전망

17) 미국 에너지정보보청(EIA)은 원유의 추정매장량을 70억~130억 배럴로,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사인 SOCAR는 175억 배럴로 평가

- 2006년 산유량은 654천b/d, 소비량은 96천b/d로 수출가능물량은 558천b/d이었으며 정부는 새로운 역외 유전 발견, 기존 유전의 개보수 등을 통해 원유수출량이 08년에는 110만 b/d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아제르바이잔의 원유는 대부분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 그루지야의 솅사 등을 통해 터키, 이탈리아로 수출

<표 II-2> 아제르바이잔 석유의 생산, 수출, 수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10
석 유 생 산	310	320	319	440	600	1,250
석유부문 순FDI	984	2,315	2,258	1,091	-245	366
석 유 수 출	2,046	2,250	3,097	4,989	7,931	17,857
석 유 수 익	21.9	21.4	20.3	23.1	-	-
석유기금 자산 ^{*)}	693	821	974	1,320	2,165	42,517

주: 전임 Heydar Aliyev 대통령에 의해 1999년에 설립된 국가석유기금으로 교육, 빈곤 감소, 농촌 생활수준 향상 등에 사용됨.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 천연가스는 최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2007년부터 Shah Deniz 해상가스전의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

- 대형 가스전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 외에 석유발전소를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하면서 소비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 러시아의 Gazprom과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연간 약 45억m³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과도한 러시아 의존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가 제기

□ 아제르바이잔은 국영석유기업인 SOCAR를 통해 15개국, 30개 기업과 offshore에 14개, onshore에 10개, 총26개의 PSA계약을 체결

<표 II-3> 아제르바이잔 PSA 계약 체결 현황

광구명 (계약체결일)	프로젝트 참여자	추정 매장량	투자규모	진행상황
Azeri, Chirag, and Deepwater Gunashli (’94. 9.20)	BP(34.1%) Chevron Texaco(10.2%) Lukoil(10%) SOCAR(10%) Statoil(8.6%) ExxonMobil(8%) TPAO(6.8%) Devon Energy(5.6%) Itochu(3.9%) Amerada Hess(2.7%)	65억 배럴, 1,400억 ft ³	200억 달러	-1997년 수출시작 - Chirag 필드: 15.8만 배럴 (’06. 5) - Azeri 필드: 23.8만 배럴 (’06. 4)
Shah Deniz (’96. 6. 4)	BP(25.5%) Statoil(25.5%) SOCAR(10%) Lukoil(10%) TotalFinaElf(10%) OIEC(10%) TPAO(9.0%)	25억 배럴 1조 m ³	30억 달러 이상	- ’06. 8월 생산개시

아제르바이잔

LankaranTalysh ('97. 1. 13)	TotalFinaElf(35%) Wintershall(30%) SOCAR(25%) OIEC(10%)	7억 배럴	20억 달러 ('00년 3,660만 달러 투자됨)	
Yalama/D-222 ('97. 7. 4)	Lukoil(80%) SOCAR(20%)	7.5억 배럴	25억~55억 달러	-첫번째 시추실패
Absheron ('97. 8. 1)	SOCAR(50%) Chevron(30%) TotalFinaElf(20%)	8.6억 배럴 100조ft ³	35억 달러 ('00년 1,060만 달러 투자됨)	-프로젝트 종료 -Chevron은 '03년 4,000만 달러 보상하고포기
Oguz ('97. 9. 1)	ExxonMobil(50%) SOCAR(50%)	2.9억 배럴 6,850억ft ³	20억 달러 ('00년 550만 달러 투자)	- '02. 4월 프로젝트 중단
Nakhchivan ('97. 8. 1)	ExxonMobil(50%) SOCAR(50%)	7.5억 배럴	20억 달러 ('00년 2,250만 달러 투자)	-ExxonMobil은 가채 매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800만 달러 보상예정
Kurdashi Araz KirganDariz ('98. 7. 7)	SOCAR(50%) Agip(25%) Mitsui(15%) TPAO(5%) Repsol(5%)	7.3억 배럴	25억 달러	-이탈리아 Agip은 PSA해제조건으 로 보상지급
Inam ('98. 7. 21)	SOCAR(50%) BP(25%) Royal Dutch/Shell(25%)	22억 배럴	20억 달러 ('00년 750만 달러 투자)	-BP는 높은 압력으로 첫 번째 시추연기
Araz,Alov,and Sharg ('98. 7. 21)	SOCAR(50%) BP(15%) Statoil(15%) ExxonMobil(15%) TPAO(10%) Alberta Energy(5%)	66억 배럴	100억 달러	- '01년 이란 포함 선과의 충돌로 채굴 연기 -아제르 이란등 카스피해 연안 국가와 분쟁지역

II. 에너지자원 현황

Atashgah ('98.12.25)	SOCAR(50%) JAOC(50%)	6억 배럴	23억 달러 ('99년 3,500만 달러 투자)	-JAOC, '03년 6월 철수
Lerik, Jenab, Savalan, Dalga ('99.4.27)	SOCAR(50%) ExxonMobil(30%)	10억 배럴	30억 달러	-D-43 D-44, D-73블럭 채굴
Zafar-Mashal ('99.4.27)	SOCAR(50%) ExxonMobil(30%) Conoco(20%)	10억~20억 배럴 1.8조 ft ³	30억 달러	-D-9D-38블럭 채굴 -ExxonMobil은 상업 매장량 발굴에 실패 하여 '06년 허가권을 포기하고 3,200만 달 러에 지급
Surakhani ('05.8.16)	Rafi oil(75%) SOCAR(25%)	0.5억 배럴	4억 달러	-25년 계약이고 5년연장 가능
Kalamaddin- Mishovdagh ('92년 JV설립후 '00년 PSA 전환)	National Energy(85%) SOCAR(15%)	2억 배럴	1억 7,800만 달러	- '04년 평균생산량 은 2,700배럴/일 로서, 3,200배럴 까지 증산계획
AnshadPetrol ('93년 JV설립후 '00년 PSA 전환)	SOCAR(50%) Attila Dogan(31.5%) Land & General Berhard(17.5%)	2.2억 배럴	-	- '04년 원유 평균 생산 량은 77,000배럴/일, 가스 평균생산량 110만 ft ³ /일
AzGeroil ('95년 JV설립후 '00년 PSA 전환)	SOCAR(51%) Grunewald(49%)	1.4억 배럴		- '99년 평균생산량 1,000배럴/일
Southwest Gobustan ('98.6.2)	SOCAR(20%) CNPC(62.83%) Arawak Energy(37.17%)	1.5억 배럴 7조 ft ³	7억 달러	-860만 ft ³ /일 생산 예상

Zykh-Govsary (’00. 6. 5)	SOCAR(50%) Lukoil(50%)	0.7억~1.5억 배럴	2.5억 달러	- 00년 1,830배럴/ 일로 생산하였으 나 Lukoil은 높은 비용과 낮은 수익 으로 광정 폐쇄
Kursangi- Garabagi (’98. 12. 15)	SOCAR(50%) CNPC(30%) Amerada Delta- Hess(20%)	7.3억 배럴	10억 달러 (06년 5,000만 달러제안)	- 03년 10개의 광정을 추가로 시추했음. - 04년 6,600배럴/일 생산중
Muradkharli- Jafarli-Zardab (’98. 7. 21)	Ramco(50%) SOCAR(50%)	7.3억 배럴	10억 달러	- 01년 첫 번째 시추광정은 폐쇄 - CNPC가 블록 입찰자 자격 획득
Padar-Kharami (’99. 4. 27)	Nations Energy(85%) SOCAR(15%)	5.8억~7.5억 배럴	1.4억 달러	- 06년중 3~4개 광정 채굴계획
Shirvanoil (’97년 JV설립후 , 00년 PSA 전환)	SOCAR(49%) Caspian Energy Group(51%)	6.5억 배럴	3,600만 달러	- ’97년 이후 1,160만 배럴 생산
West Absheron (’94. 8. 10)	BMB(100%)	2억 배럴	7억 달러	- 99년 SOCAR에게 매각하였고 SOCAR 의 자회사(Azneft)가 , 05년 시추작업 개시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2. 주요 광구 현황

(1) ACG(Azeri-Chirag-Guneshli) 유전

□ Azeri 유전, Chirag 유전, Deep Water Guneshli 유전으로 구성된

이나라 최대의 원유매장지대로서 바쿠 동남쪽 120km 카스피해상에
위치

□ 개발사업

- 참여사: AIOC 컨소시엄
- 매장량: 원유 65억 배럴, 콘텐세이트 450만 배럴, 천연가스 2.2조 ft³
- 프로젝트 비용: 약 150억~200억 달러 예상

□ 2007년 55만 b/d, 2009~10년 100만 b/d의 원유 생산이 목표

- 1단계(Chirag 유전개발): '95년부터 개발 착수, '97년 원유생산 개시
- 2단계(Azeri 유전개발): 1차 Central Azeri 유전개발 및 생산,
2차 West and East Azeri 유전개발 및 생산
- 3단계(Guneshli 유전개발): 2008년 생산 개시(예정)

<표 II-4>

ACG 유전의 생산 전망

유 전		생산개시 시기	최대생산량(천b/d)
Azeri	East	2006. 8	260
	Central	2005. 2	240
	West	2005. 12	300
Chirag		1997. 11	150
Guneshli		2008(예정)	320
합계			1,270

- 현재 Chirag, Azeri 유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원유는 Baku-Supsa
송유관을 통해 흑해에 위치한 그루지야의 Supsa항으로 수송

- '06. 8월부터 East Azeri 광구의 생산개시로 석유수출량은 55만 b/d로 증가할 전망

(2) ShahDeniz 가스전

□ Baku 동남쪽 약 70km 카스피해상에 위치

□ 개발사업 개요

- 참여사: BP(25.5%, 운영사), Statoil(25.5%), SOCAR(10%), LukAgip(10%), TotalFinaElf(10%), OIEC of Iran(10%), TPAO(9%)
- 매장량: 원유 25억 배럴, 가스 1조 m³
- 프로젝트 비용: 30억 달러 이상
- 1996년에 생산물분배계약(PSA) 체결

<그림 II-1> ShahDeniz-Sangachal 파이프라인



- '06년 8월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2007년 중 28억 m³를 생산할 계획이며, 최대 86억 m³까지 증산 계획

3. 정유산업, 파이프라인 현황

(1) 정유산업

- Baku 지역에 Azerineftyag 정유공장(정유능력 23.9만b/d)과 Haydar Aliev 정유공장(20만b/d) 보유

- 정유시설 가동률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설비의 현대화와 오염통제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2010년까지 약 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2) 원유 · 가스 파이프라인

- BTC 송유관과 SCP가스관 보유

- BTC(Baku-Tbilisi-Ceyhan) 송유관

- 개통일: 2005. 5. 25
- 노선: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Baku 인근 Sangachal 터미널에서 그루지아의 수도 Tbilisi를 경유, 지중해 연안의 터키 Ceyhan항을 연결
- 연장: 총길이 1,767km
- 수송능력: 100만 b/d

아제르바이잔

- 건설비용: 36억 달러(총건설비의 50%는 세계은행, EBRD 등 국제 금융기관 등이 지원)
- 참여 기업: BP(영국, 30.1%), SOCAR(아제르바이잔, 25%), Unocal(미국, 8.9%), Statoil(노르웨이, 8.71%), TPAO(터키, 6.53%), ENI(이탈리아, 5%), Total(프랑스, 5%), Itochu(일본, 3.4%), INPEX(일본, 2.5%), ConocoPhillips(미국, 2.5%), Amerada Hess(미국, 2.36%) 등
 - ※ BTC 송유관의 개통은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독립성 확보, 세계 석유공급원 확대 및 에너지안보의 증대에 긍정적 영향
- 아제르바이잔은 수출물량 증대, 석유수송의 러시아 의존 탈피, 수송 병목지역(흑해 보스포루스 해협) 우회 및 수송비용 절감 등 혜택

<그림 II-2> BTC 송유관 및 SCP 가스관



□ SCP(South Caucasus Pipeline) 가스관¹⁸⁾

<그림 II-3> SCP 가스관



- 2006년 5월에 완공, 12월부터 생산과 수송 개시
- 노선: 터키와 그루지야 접경지역에서 터키의 Erzurum까지 280km는 터키 국내 Botas 가스관에 연결되며 BTC 송유관과 동일한 경로
- 연장: 1,053km
- 수송 능력: 연간 80억 m³
- 참여기업: Statoil(25.5% 운영자), BP(25.5%), SOCAR(10%), Total(10%), Lukoil(10%), Agip(10%), OEIC(이란, 10%), TPAO(터키, 9%), Pennzoil(미국, 5.6%), Itochu(3.9%), Delta/Hess(사우디/미국, 2.7%)

18) BTE(Baku-Tbilisi-Erzurum) 가스관이라고도 불림.

- 파이프라인 경유국인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가스 공급

4. 주요 석유기업

○ SOCAR(State Oil Company of the Azerbaijan Republic)

- 국영석유사로서 Azerineft와 Azneftkimiya의 합병으로 1992년 9월 설립되었고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천연가스의 생산·수출입을 총괄하고, 2개의 정유공장, 송유관 시설 보유
- 외국기업과의 석유채굴 및 PSA 체결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나 SOCAR가 모든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
- 40여 개의 역내·외 유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전이 채굴 장비와 유정 노후화로 생산이 정체상태에 있어, 최근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입에 힘입어 신규 유전개발을 활발하게 추진

○ AIOC(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

- 1994년 9월에 이나라 최대유전인 ACG 역외유전의 개발을 위해 결성된 국제컨소시엄
- 참여기업: BP(34.1%, 운영권자), Chevron(10.2%), Lukoil(10%), SOCAR(10%), Statoil(8.6%), ExxonMobil(8%), TPAO(6.8%), Devon Energy(5.6%), Itochu(3.9%), Amerada Hess(2.7%)
- '97년 이후 이나라의 산유량 증가분의 대부분 및 수출량의 약 70%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산유량은 전년보다 64.3% 증가한 2,300만 톤(45만 b/d) 기록

<표 II-5>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추이

1994	석유(백만톤)				천연가스(10억 m³)			
	역 내			역 외	역 내			역 외
	전 체	SOCAR	AIOC		전체	SOCAR	AIOC	
1995	9.5	9.6	0	7.8	6.4	6.4	0	6.1
1996	9.1	9.1	0	7.5	6.6	6.6	0	6.4
1997	9.1	9.1	0	7.5	6.3	6.3	0	6.1
1998	9.1	9.0	0.1	7.5	6.0	6.0	0	5.7
1999	11.4	9.0	2.4	9.8	5.6	5.2	0.4	5.3
2000	137	9.0	4.8	123	6.0	5.8	0.2	5.8
2001	139	9.0	5.1	125	5.6	-	-	5.4
2002	149	9.0	5.9	133	5.5	4.7	0.9	5.3
2003	153	8.9	6.5	138	5.1	4.1	1.0	-
2004	154	8.9	6.5	138	5.1	4.1	1.0	-
2005	155	9.0	6.6	-	5.1	4.0	1.1	-
2006	230	9.0	140	-	6.4	3.9	2.5	-
	320	9.0	230	-	9.1	4.5	4.6	-

자료: EU, SOCAR Annual Report 2006.

Ⅲ. 광물자원 현황

- 철, 아연, 몰리브덴, 명반석, 금, 은 등 철금속 및 비철금속, 희귀금속, 준보석 등 약 340 종류의 다양한 광석 및 비광석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100여 종류의 광석을 현재 개발 중
 - 철은 매장량이 약 5,000만 톤으로 주로 Dashkesan 지역에 매장
 - 알루미늄은 남부 Dashkesan 지역에서 채굴되고 있고, 매년 300만 톤의 알루미나이트를 채굴하여 약 40년 이상 운영 가능
 - 동은 Filizchay, Kasdagh, Kateh, Sagatar 지역에 전체의 90%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데 현재 6개 광산이 채굴중이고 Nakhchivan 자치공화국의 Gumushluk, Aghdara 2개 지역의 채굴을 검토 중
 - 금은 Zangilan과 Karabakh 지역(아르메니아와 분쟁지역)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데, 특히 아르메니아가 Zod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 하면서 수십년 동안 금을 채굴하고 있어 아제르바이잔은 평화의 조건으로 이 영토를 반환하고 난민들을 귀환시킬 것을 요구 중
 - 그 밖에도 석회석, 시멘트, 대리석 등 건축용 원자재와 수은, 광천수 등 보유

IV. 석유산업 정책

□ 아제르바이잔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은 에너지의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을 다각화하는데 초점

- 산업다각화의 재원조달을 위해 에너지 수출수입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아제르바이잔 국가 석유기금(SOFAZ)’을 운용
- 정부는 2004년 ‘석유 및 가스 소득의 운용에 관한 장기전략’을 바탕으로 비에너지부문 및 중소기업의 지원,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투자

□ 산업다각화 정책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국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핵심부문은 첨단 IT산업과 운송 인프라 등 기간산업으로서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발전을 위한 국가 IT전략 2003~12’를 수립하고 EBRD와 협력하여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

□ 최대 산업인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신규 원유·가스전 개발과 함께 파이프라인 건설 및 보수를 추진

- 정부는 EBRD의 ‘지속가능 에너지 프로그램(Sustainable Energy Program)’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 에너지 수출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BTC 파이프라인 개통에 이어 SCP 가스관 등 신규 석유·가스 수송체계의 확충에 주력

□ 정부는 유전개발 및 석유산업에 외국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2005~2015년 국가 연료에너지산업 개발 계획' 추진 중

- SOCAR의 석유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대통령이 2005년 2월에 동 계획을 승인
- 석유 및 가스 생산에서 SOCAR의 역할을 줄이고 원유의 개발뿐 아니라 석유산업 전반에 외국기업과 은행의 자본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 외국기업들은 새로운 유전개발, 기존 유전의 추가개발, 기존 유전의 신규 광구 시추, 휴면광구의 재개발, 서비스업종 등에 참여 가능
- 향후 석유산업에서 SOCAR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외국석유 기업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전망

□ 노후 설비의 개량과 심해유전의 개발에 필요한 자본,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투자 유치에 적극적

- 육상 유전은 생산수명이 다한 경우가 많고 설비가 노후화되어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며 생산된 원유의 상태도 불량
- 기존 유전의 생산량 증대와 설비 개량은 물론, 카스피해의 해상유전도 저류층까지 평균 깊이가 6,500m에 이르고 시추비용이 평균 1,500만~2,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개발에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
- Gyuneshli 유전의 경우 천해부분은 생산비용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SOCAR의 불충분한 투자로 인해 생산량 증대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

- 즉, 정부가 산유량 증대를 위해서는 내륙 유전보다 몇 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카스피해 해상유전의 개발이 불가피하여 외국기업들의 투자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

V. 외국인 투자환경

1. 관련 법률

□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

- 외국인투자법(Law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1992)
- 투자활동법(Law on Investment Activity, 1995)
- 민영화법(Privatization Law, 2000)

□ 법인설립 관련 법률

- 민법(Civil Code, 2000)
- 법인등록법(Law on State Registration and State Register of Legal Entities, 2003)
- 유한책임회사법(Law o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1998)

□ 투자허가 관련 법률

- 기업활동법(Law on Entrepreneurial Activity, 1992)
- 기업허가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on Improving the License Issuing Rules for Some Type of Activity, 2002. 9)

2. 외환제도

- 법정통화인 Azeri Manat는 1992년에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화 방침에 따라 화폐단위 변경조치 redenomination가 단행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新 Azeri Manat 도입
 - 명칭은 종전과 동일한 Azeri Manat으로 유지하며 구화폐와 신화폐가 5,000 대 1로 병합되어 미달러화에 대한 새로운 환율은 0.87 新 Azeri Manat/US\$로 책정(2007년 10월 현재 환율은 미달러당 0.8506 Azeri Manat)
- 외환거래 관련 기본법은 외환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1994)이며,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Azerbaijan: NBA)이 외환정책 결정권과 외환통제와 관련된 규정 제정권 보유
- 외환법은 해외부채 상환, 로열티·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하게 구분
 - 거주자는 아제르바이잔에 계속적인 거주지를 갖는 개인 및 아제르바이잔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외국법인의 아제르바이잔 내 지점 및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
 -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규제가 거주자에 비해 훨씬 덜 제한적
- 수취인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지급은 국내통화로 결제

- 외환의 매매·교환은 인가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 거주자는 국내은행에 외화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국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동의 필요
- 특별송금제도
 - 송금액 10,000달러 초과: 동 금액이 현금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유입되었음을 입증하는 통관증명서, 개인의 입국비자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송금액 50,000달러 초과: 외환을 취득한 해외은행으로부터 은행증명서, 현금영수증 등의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수입대금 선급
 - 수입대금은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품이 180일 이내에 인도된다는 조건 하에 25,000달러까지 수입대금의 선급 가능
 -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급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기준인 '건전한 거래' 여부는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판단

3. 조세제도

- 조세제도는 일반 조세제도(Statutory Tax Regime)와 석유관련 조세제도(Oil Consortia Tax)로 구분되며, 석유관련 조세제도는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 또는 유사한 협정에 따라 진출한 외국법인에 적용
- 일반조세는 2000년 조세법과 기타 하급법에 규정

<표 V-1>

일반조세

세 율	납세자	과세근거	면세대상
법인세(소득세): 22%	· 거주기업: 전체이익에 과세 · 비거주 영속기업(PE) ^{*)} : 국내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과세	이익(소득)에서 관련비용 차감	· 자산기관의 소득 · 비영리기관이수취한 기부금, 회비 등 ·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등의 소득
비거주자원천징 수: 소득에 따라 4%, 6%, 10%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업 · 비거주PE는 거 주자로 간주	PE가 아닌 비거 주자의 총소득은 비용차감 없이 원천징수	
법인세(소득세): 22%	· 거주기업: 전체이익에 과세 · 비거주 영속기업(PE) ^{*)} : 국내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과세	이익(소득)에서 관련비용 차감	· 자산기관의 소득 · 비영리기관이 수취한 기부금, 회비 등 ·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등의 소득

비거주자원천징수: 소득에 따라 4%, 6%, 10%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업 · 비거주PE는 거주자로 간주	PE가 아닌 비거주자의 총소득은 비용차감 없이 원천징수	
피고용자 소득세: 0~35% (누진과세)	·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기업 · 비거주PE는 거주자로 간주	급여 등 고용 관련 피고용자의 수취 소득	· 아제르바이잔 시민이 아닌 외교관 영사 등의 소득 · 아제르바이잔 시민이 아닌 자가 182일 미만의 국내체류 중 발생한 고용소득 · 일정한도 내 선물, 원조, 상속 등 · 손실보상 등
부가가치세 (VAT): 18%	· 부가세 납부자로 등록했거나 등록이 필요한 자 ·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부가세 목적의 등록이 요구됨 · 부가세 납부대상 물품 수입자	제공하는 재화, 용역가액 또는 과세대상 수입가액	· 국영기업 민영화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의 취득비용 · 금융서비스 제공 · Charter Fund 기부금 · 해외로부터의 증여로 구입 또는 수입한 재화 · 용역(0% 적용) · 수출(0% 적용)
소비세: 세율 다양	소비세 부과대상 재화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알코올 담배, 석유류 제품 등이 대상임	·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통과하는 물품 · 재수출용 외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
재산세: 자산에 따라 최고 1%	건물 차량 등 재산 소유자	연평균가액	· 환경보호, 화재예방, 대중보호용 설비 · 물품운송관, 철도, 도로, 통신 · 전력선 관개설비 등
토지세: 토지위치, 유형에 따라 세율 다양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		· 공동주택용지 · 국경지역 또는 국방목적 토지

광업세(로열티): 3~26%	상업용으로 광물 자원 추출하는 자	아제르바이잔 국내에 서 추출된 광물자원	
주행세: 차량종 류, 수, 운송거리 에 따라 결정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위 해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이용하는 비거주자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들어오는 외국차량	
간이세: 바쿠지역 4%, 기타지역 2%	분기매출액이 일 정한도(현재 25천 달러)를 넘지 않는 기업 또는 개인	납세자의 총수익 (영업 및 영업외)	VAT, 재산세, 법인세
법정사회보험: 고용주(22%), 피고용자(3%)	고용주 및 피고용자	피고용자 급여	- 2006년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

주: permanent establishments.

자료: Baker & McKenzie,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7. 5.

4. 석유관련 조세체제

- PSA, 진출국정부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 HGA) 등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내의 유전개발 또는 송유관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에 유리한 조세체제 제공
- HGA는 아제르바이잔 조세 면제, 0% 부가가치세 적용, 외국인 우대 등 PSA보다 유리한 조세조건 적용

-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22개국¹⁹⁾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4개국²⁰⁾과 협상을 진행 중

5. 관세제도

- 수입품은 관세부과 대상이며, 관세는 0~15%의 종가세(ad valorem duty)와 품목별 종량세 적용
- 임시수입(temporary import)의 경우, 수입품은 속성의 변화 없이 세관이 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하나,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
- 물품세(excise tax)는 담배, 알코올 등 특정품목에만 부과
- 수입물품은 신고가액(수입관세 및 물품세 포함)을 기준으로 18%의 VAT가 부과되나 특정 분류 또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 대부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수수료(0.15%)가 부과되며, 특정 금속 및 금속제품 외에 수출은 관세 면제
- PSA 하에서는 계약자(대행인, 하도급계약자 포함)는 수입, 재수출과 관련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석유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수입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며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면제

19) 영국,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그루지야, 폴란드, 러시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프랑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중국, 독일, 캐나다, 라트비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20)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파키스탄, 일본

6. 노동제도

□ 노동관련법

- 노동법(Labor Code, 1999) 등에 따라 개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외국 법인도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은 노동관계법보다 불리한 노동조건 적용 금지
-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에는 계약자 일방이 3일전에 통보함으로써 고용계약 해지 가능
-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노동기록부(근로자의 국가연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를 제출하고, 고용인은 근로자의 노동기록을 기입해야 하나, 강제이주자, 난민, 외국인, 무국적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노동조건

- 최저임금: 월 50 Azeri Manat(약 58 달러)
- 근로시간
 - 정규 노동시간: 주 40시간(특정 노동집단은 그 이하)
 - 국방, 공공안전, 기타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강제적 초과근무 요구 불가
 - 초과근무는 노동법이 정한 기준 이내에서 가능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 근무 등은 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

－ 휴가

- 법정휴무일: 18일
- 유급휴가일수: 최소 21일
- 병가: 처음 14일 이후의 병가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아닌 국가사회 보장기금이 보상
- 출산휴가: 출산전 70일, 출산후 56일. 고용주가 아닌 국가사회 보장기금이 보상

□ 고용계약 종료

- － 고용계약은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절적 특성이 있는 노동, 한시적 프로젝트, 당사자간 합의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용기간 한정 가능
- － 기한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7일전까지 계약종료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
- －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인은 법정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고용계약 종료 가능
 - 법정 사유: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 잉여인력 발생, 근로자의 자질이 임무수행에 부적격한 경우, 노동조건의 변화 등
- － 고용인은 고용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지할(통상 만료 전 2개월)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

- 근로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의 '일과 중 구직활동'을 허용
- 특정 근로자(임산부, 3세미만 아동 부양여성)와의 고용계약 종료는 허용되지 않음.
- 잉여인력 발생, 작업장 폐쇄, 기업청산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인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
-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월 근로자 급여의 22%를 법정사회보험으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급여총액의 3%를 사회보험으로 원천징수함과 아울러 근로자를 대신해 동일금액을 추가로 국가에 납부
- 경영자가 사회보험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업, 운송, 건설 분야의 경우에 국가 전체 최소임금 평균액의 약 70%, 기타 업종은 약 40%

7. 회계 및 공시제도

- 구소련의 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법(1995년)이 적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회계제도를 마련 중
- 민법(2000년)은 법인의 재무보고 및 감사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
 - JSC와 LLC는 연간 재무상태에 대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JSC는 연차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
 - 대차대조표 잔액이 10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수익이 51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감사를 받아야 하나, 그 이외의

법인들은 약식 대차대조표도 허용

- 조세법(2000년)은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아래 상각률로 허용
 - 건물, 시설물 등: 7% 이내
 - 기계, 장비, 컴퓨터 등: 25%이내
 - 운송장비: 최고 25%
 -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10% 이내, 내용연수가 규정된 경우 내용연수 이내
 - 기타 고정자산: 최고 20%
-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생산목적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표준상각률의 2배까지 가속상각을 허용
- 은행에 대해서는 서방세계의 회계원칙에 입각한 별도의 회계원칙 적용

Ⅵ. 우리기업의 투자현황 및 진출방안

1. 우리나라의 투자현황

(1)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해외직접투자현황

□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는 1992년 수교 이래 2007년 9월말까지 3건, 76천 달러(누계, 총투자기준)로 미미한 수준

- 그러나 2006년 우리나라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의 IT 등 정보통신, 항만, 조선 등 인프라 건설에 관심

□ 업종별로는 1997년 도소매업 5천 달러, 2007년 건설업 7만 1천 달러로 투자 초기단계이며, 향후 석유개발, 도로 및 항만 건설, 도시 건축 등에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대표적 투자로는 GS건설이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를, 울트라 건설이 예브락-간자 구간 89km 지방도로 2차선 확대포장 공사(1억 6,500만 달러 규모)를 각각 추진 중

(2) 자원개발 투자현황

□ 한국석유공사(KNOC)가 추진하는 Inam광구 참여사업이 유일

- 제1차 한-아제르바이잔 자원협력위원회에서 KNOC와 SOCAR간의 Inam광구 공동개발에 관한 실무협상안에 합의('06. 8. 29)
- 동 광구에는 원유 약 20억 배럴, 컨덴세이트 8,400만 배럴, 가스 5.1조 ft^3 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KNOC가 주축이 된 한국계 컨소시엄²¹⁾은 '07년 10월 Inam 광구 투자자인 Shell의 지분(20%)을 인수하고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승인 획득
- 한국계 컨소시엄은 지분 매입시에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완에 법인을 설립하고, 2007년 11월부터 탐사시추 개시

Inam 광구 사업 개요

- 광구 개요
 - 위치 : 카스피해 중남부
 - 참여사: BP(25%, 운영권자), Shell(25%), SOCAR(50%)
 - 추정 매장량: 원유 약 20억 배럴 (탐사단계)
- 사업 추진경과
 - '06. 3월 석유공사, Inam광구 참여 前단계로서 MOU (Inam 광구 진출 등 협력 MOU) 체결 제안
 - '06. 5월 석유공사와 아제르 국영석유회사 간 MOU 체결
 - '06. 8월 기술자료 검토 후, 지분매각협상 본격 착수(전체 지분 중 최대 20% 매입 목표)
 - '07. 10월 지분 인수 타결(정부승인 완료)

21) 컨소시엄(20%)은 석유공사(8%), GS칼텍스(4%), 경남기업(4%), STX(2%), 대우인터내셔널(2%)로 구성

2. 우리나라의 진출방안

□ 원유의 추가개발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육상유전은 구소련 시절에 70~80년간 채굴되어 잔존매장량이 빈약하고 카스피해 해상유전만이 미개발 상태
- 특히 PSA계약이 체결된 26개 광구 중 실제 운영중인 유전은 ACG, ShahDeniz 2개에 불과하며, 기타 유전도 광권 가격이 상승하여 지분 인수비용이 적지 않고 초기 탐사단계의 비용을 고려할 때 진출 성공 가능성이 낮음.
 - 최근 미국, 일본계 석유기업은 탐사 작업 후 상업성이 떨어져 보상금 (compensation)을 지급하고 철수
-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인수한 Inam 광구의 경우처럼 기존 지분 (대부분 BP, Shell, Exxonmobil 등 대형 석유기업이 보유)을 인수 하거나 탐사에 실패한 광구 중 가능성이 있는 곳²²⁾을 선정, 참여하는 방법이 바람직
 - 새로운 광구 개발에 비해 기존 광구의 지분 매입은 비용이 저렴
- SOCAR(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는 한국이 석유, 가스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질, 환경, 생태와 관련한 기술수준을 증명하고 유망 지역에 대해 기업들이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MOU 체결 이나 구체적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22) 개발가능성이 크지만 이란과 영유권 문제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Alov 유전 등

- 정유 부문의 경우에도, 한국의 정유나 석유화학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본의 참여방안 제시 희망

□ 석유산업 진출시 정부차원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정책은 SOCAR와 대통령(SOCAR 부회장 출신)에 의해 결정되며, 석유, 가스 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국영석유 기업인 SOCAR의 자체 내규에 의해서 결정
- 1994년 이래 SOCAR가 주축이 되어 26개의 PSA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번 한국의 진출도 SOCAR가 Inam 광구의 기존 주주인 Shell에게 일부 지분을 한국에 매각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성사

□ SOC 건설에 관심을 가질 필요

- 최근 국제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으로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회 기반시설(도로, 전기, 상하수도)은 여전히 크게 미비
- '07. 4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에 아제르바이잔 측은 공적개발원조(ODA) 보다 인프라 개발 및 기술지원을 요청
- 아제르바이잔의 도로 건설은 도로청, 교통부에서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도로는 세계은행, 이슬람 은행의 지원으로 대부분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지방도로 및 공항, 환경 분야(재활용,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정화시설 등 식수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필요

□ ODA 지원을 통한 수출자금 연계 강화

-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자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국가나 기업에 대해 주요 프로젝트 참여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ODA 지원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이 수익성이 있는 인프라 건설 위주로 진출한다면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통, 도시 재개발, 발전소, 교육, IT 등 부문은 우리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
- 항만(GS건설), 조선(STX), 건축 설계(희림), 도로(울트라건설), 태양 및 풍력발전(STX) 등에 일부 기업이 진출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석유화학 등 정유부문의 진출 가능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3. 진출시 유의사항

□ 부정부패 만연

-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로서, 정치인들이 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대기업들이 정치인과 결탁함에 따라 뇌물 등 부정부패 만연
- 공증료(Notary)의 경우 실제로는 법적 요금보다 높게 요구하며, 심지어 대학교에서의 시험이나 졸업도 뇌물로 해결하려는 풍토

□ 금융 및 회계시스템 불투명

- 금융 및 조세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부패로 인해 영수증 및 회계 처리에 많은 애로²³⁾
- 현지 은행에 현지법인 직원들의 월급카드(salary card)가 있어 월급의 1%를 무조건 공제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석유기금도 현지 은행에 예치토록 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미비
 - 반면, 부존자원이 매우 빈약한 인접국가인 그루지야는 관광산업과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아제르바이잔의 자금이 그루지야의 은행들로 유출되는 상황

□ 사업상 과도한 세금 부담

- 독자적인 법인 설립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관료와 합작 또는 협력을 통해서 사업권이나 법인운영이 가능
- 법인 설립후 법인세 22%, 부가가치세 18%, 관세 20%로 조세 부담이 과중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
 - 거래규모가 3개월 연속 \$25,000를 초과하는 기업은 VAT 납세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

23) 2001년 현지에 진출하였던 LG 전자가 2006년에 철수한 것은 거래처의 탈세 행위 및 불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참 고 문 헌

1.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천연가스산업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2004. 12.
2. 이재영, 윤성학,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가이드, 무역협회, 2006. 12.
3. 이재영, 박상남,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 4.
4. 이성규,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확보를 둘러싼 미·러·중간 마찰, 에너지 경제연구, 2005. 12.
5. 김정식, 카자흐스탄 유·가스전 개발 투자환경 및 계약의 특성 분석, 한국가스공사, 2007.
6.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7. 대한광업진흥공사 국가별 자원정보현황(KOMIS).
8. BP, 'BP's annual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7. 6.
9. Baker&McKenzie, 'Doing Business in Uzbekistan', 2005. 1.
10. PwC, 'Business and Investment Guide Uzbekistan 2007'.
- 11 Russian/CIS Energy & Mining Law Journal, 2005. 6.
12. Legal, Fiscal&Contractual Terms Kazakhstan, 2005. 10.
13. PwC, 'Doing business in CIS, 2007-2008'.

중앙아시아 3개국의 자원 현황과 진출방안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발행일	2007년	12월	7일
발행인	양	천	식
편집인	권	두	환
발행처	한	국	수출입은행

우편번호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41

